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I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 성 | 최해인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선정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심록희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VI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 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요 약 / 1

I. 개요 / 1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3

II. 정책 환경 및 현황 / 5

- 1. 정책 환경 5
 - 가. 청년 고용 현황 5
 - 나. 청년 주거 현황 11
 - 다. 청년 자산 현황 17
- 2.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현황 20
 - 가.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20
 - 나. 청년정책 23
 - 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28

III. 주요 쟁점 분석 / 32

- 1.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 32
 - 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 예·결산 분석 32
 - 나. 청년정책 예·결산 분석 35
 - 다.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38



CONTENTS

2.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42
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분석	42
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성과관리 체계 분석	50
3. 분야별 청년정책 집행 및 성과 분석	54
3-1. 일자리 분야	54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54
나. 분석 의견	55
(1)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 실효성 및 환류 강화 필요	55
(2) 청년의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한 구직급여 개선방안 필요	60
(3) 개별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64
3-2. 자산형성 분야	70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70
나. 분석 의견	71
(1)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71
(2) 장병 자산형성 사업(병내일준비지원)의 사업구조 개선 필요	77
3-3. 주거 분야	81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81
나. 분석 의견	82
(1)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뉴:홈(공공분양주택) 사업 추진 필요	82
(2) 청년·신혼부부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필요	86



CONTENTS

3-4. 교육·복지·문화 분야	92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92
나. 분석 의견	93
(1) 고등교육 부문의 재원배분 및 재정부담을 고려한 국가장학금 운영 필요	93
(2)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 운영 필요	102

IV. 결론 및 시사점 / 107

요 약

I.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국회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연도 예산안에 중점과제로 청년 지원 재정사업을 편성
 -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주거·자산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지원 재정 사업을 편성. 2021년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20.2조원을, 2022년에는 동일한 사업명으로 23.4조원을, 2023년에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사업’으로 24.1조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산안에도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로 편성될 계획
-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청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3년이 되는 시기로 단기간에 청년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
 -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나, 실제 청년정책은 청년의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복지 등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 개별 사업이 청년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상황
-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을 통해,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추진체계·성과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야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 정부에서 2022년 예산안에 12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분석
- 현황에서는 정책대상인 청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청년정책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청년정책 현황,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현황을 정리
- 주요 쟁점 분석에서는 ① 청년 지원 재정사업과 청년정책의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 ② 청년 지원 재정사업과 청년정책의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③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분야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집행 및 성과 분석의 순으로 구성
- 분석방법으로는 문헌 검토, 법령 검토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분석

II. 정책 환경 및 현황

1. 정책 환경

- **(고용)** 최근 경기 부진 심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자 수 감소,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정규직 비중의 감소 및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첫 일자리 근로형태가 시간제 취업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청년의 고용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거)** 최근 취업이나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지연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
- **(자산형성)**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생활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채무부담의 증가 속에서,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8.1%로 전체 평균(16.7%)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2. 청년정책 및 청년 지원 재정사업 현황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을 규정
-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 참여와 주도, ② 격차 해소, ③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
 - 이후 2023년 청년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3년 수정안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
 -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은 중앙행정기관 기준 2021년 예산 23.8조원(과제 308개)에서, 2022년 24.6조원(과제 376개), 2023년 25.4조원(과제 390개)으로 나타나, 청년정책의 과제 수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22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포함한 4.0조원을 투입하여 총 1,412개의 과제를 수행
- 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주거·자산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예산에 청년 지원 재정사업을 편성

- 2021년 예산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142개 사업에 20.2조원을, 2022년에는 동일한 사업명으로 137개 사업에 23.4조원을, 2023년 예산에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사업’으로 131개 사업에 24.1조원 편성

Ⅲ. 주요 쟁점 분석

1.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

-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137개 사업에 청년예산 23.4조원을 편성,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47.6조원이며 이 중 45.2조원 집행
- 2022년 3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 376개의 과제에 24.6조원을 편성, 해당 과제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50.7조원이며 이 중 46.2조원 집행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및 수정안」은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중 일부는 동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므로,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2.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의 사업 수 및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계획수립 등의 심의안 건만 다룬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명시한 역할 중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계획 심의·의결만 이루어지고, 그 외 제3호~제7호에서 제시

하고 있는 활동은 미흡.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청년정책 중 지원대상이 청년층에 한정되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년 대상 사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
-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그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나, 청년정책 평가는 사업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측면이 있고, 환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3. 분야별 청년정책 집행 및 성과 분석

가. 일자리 분야

- 일자리 분야는 청년들의 구직·역량향상의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80개 사업에 청년예산 5.4조원을 편성,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5.8조원이며 이 중 4.3조원 집행
- 정부는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일자리사업 평가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청년 고용실태 개선 효과를 제고할 필요
 -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구직·역량향상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함에도 두 정책간 일자리 분야로의 포함된 세부(내역)사업이 다르거나, 동일한 사업이 두 정책에서 분야 구분이 다르게 나타남

- 이와 같이 청년 재정지원 사업 및 청년정책에서 일자리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운영되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의 고용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동일한 기준이나 방식으로 성과관리가 어려우며, 정책별·연도별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면 연속적인 성과평가 또한 어렵고 문제점 진단을 통한 정책의 환류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 평가는 실제 청년의 고용실태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 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수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업의 청년 고용 유발효과와 관련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평가 결과와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역전현상¹⁾ 심화, 반복적 수급 인원 증가 등에 따라 청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재수급 기간 설정,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 단가 차별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구직급여의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반복적 수급 인원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청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 청년 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뚜렷한 휴식 이유도 없이 일하지 않는 ‘쉬었음’의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41만 4천명으로, 청년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자산형성 분야

- 자산형성 분야는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8개 사업에 청년예산 2.0조원 편성,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 신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2.0조원이며 이 중 1.8조원 집행

1)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 근로소득보다 최저 구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인 반면, 최저 구직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 구직급여가 월 4만 7,240원 더 받게 되어있다.

□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는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국가정책적 목표로서의 타 분야와의 연계가 미흡하게 나타나며, 자산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주거 안정, 결혼·출산지원, 창업, 교육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

- 현재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용은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총급여 3,600만원의 가입 기준을 총급여 6,000만원으로 완화시키고 납입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 비해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보다 정책 효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청년세대 간 역진성·형평성 관련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병 자산형성 사업인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회계연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만기 후 원리금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 병사의 적금 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사업구조 단순화, 가입 및 해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

- 현재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전역 이후 전역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해지처리를 하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2022년 말 전역자와 전역 이후에도 적금계좌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칭지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동 사업의 집행관리에 어려움
- 병사 입장에서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적립한도액(4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행별 한도가 20만원인 관계로 2개의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불편 발생

다. 주거 분야

-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 취득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17개 사업에 청년예산 6.3조원을 편성,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29.5조원이며 이 중 29.0조원 집행
- 정부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23년부터 '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호(청년층 3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22년 연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 실적은 1.3만호로 '23년 공급계획(7.6만호) 대비 17.5%수준으로, 공급목표 달성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의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낮고 공가율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

라. 교육·복지·문화 분야

- 교육·복지·문화 분야는 청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32개 사업에 청년예산 9.7조원을 편성,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0.3조원이며 이 중 10.2조원 집행
-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라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고 저소득층의 사립대 등록금 부담률 또한 낮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국가장학금 지원은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재량 지출이므로, 향후 고등교육 부문의 재원배분 및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사후관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미충원 및 충원 인력의 상당수 퇴사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게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IV. 결론 및 시사점

1.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방안 검토 필요

-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범위는 특정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범주로 확장. 또한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관련 사업·과제 수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점검·분석·평가,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계획수립 이외의 역할에서는 제한적
- 정부는 청년 대상 사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
 -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범위가 폭넓게 나타나고 사업 내용 또한 각기 다른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은 지원대상이 청년층에 한정되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청년정책 성과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 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청년정책은 2023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나, 청년정책 평가는 사업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측면이 있고, 환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정책 여건 및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추진 필요

- 청년의 '쉬었음' 인구의 증가 등 고용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부는 청년의 근로의욕 제고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 및 일자리 사업의 고용 성과관리 필요
 - 정부는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구직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청년 취업률·고용유발효과 등을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취업 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투입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 청년의 자산형성 사업 추진시,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창업, 교육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재정투입에 따른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
 - 또한 장병 자산형성 사업인 '병내일준비적금'이 병사들의 전역 시 목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 단순화, 가입 및 해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

- 청년의 주거 여건에 부합하는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이 추진될 필요
 - 최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지연과 지속되는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
 - 정부는 충분한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뉴·홈(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할 필요
- 고등교육 부문의 재원배분 및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필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체계적 운영 필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연도 예산안에 중점과제로 청년 지원 재정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주거·자산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지원 재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2021년 예산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20.2조원을, 2022년에는 동일한 사업명으로 23.4조원을, 2023년 예산에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사업’으로 24.1조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6월 14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서도 청년 지원 재정사업이 12대 핵심재정사업으로 편성되어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청년정책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시기로, 단기간에 청년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하여 청년의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 지원 재정 사업은 청년의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복지 등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 개별

사업이 청년정책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을 통해, 청년 지원 재정 사업 및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각 분야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에서 2022년 예산안에 12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청년정책의 기본법인 「청년기본법」¹⁾에 따른 청년정책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 및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 환경 및 현황에서는 정책 대상인 청년세대를 둘러싼 정책 환경을 고용·주거·자산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청년정책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청년정책 현황,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 분석에서는 ①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 ②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③ 분야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집행 및 성과 분석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분석 내용
I. 개요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분석의 구성 및 방법
II. 정책 환경 및 현황	◦ 정책 환경: 청년 고용·주거·자산 현황 ◦ 청년정책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 청년정책 및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 청년 지원 재정사업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 ◦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 청년 지원 재정사업 분야별 집행 및 성과 분석 -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분야별 추진 현황 및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종합제언

먼저 청년 지원 재정사업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에서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이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청년 지원 재정사업(2021~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023년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중

1)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합지원 사업)의 예산 및 결산 추이와 더불어, 청년정책의 상위 계획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에서는, 최근 정부가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정책의 사업 수 및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적절한지, 또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성과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분야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 분석에서는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을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분야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분야·사업별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에는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정부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각 부처의 제출자료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주장의 근거를 위한 연구보고서 및 국가통계자료 등을 활용·분석하였다.

1

정책 환경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여건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대책으로, 청년세대에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한 청년세대의 고용, 주거, 자산형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에 앞서 사업추진 당시 및 현재까지의 청년세대를 둘러싼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청년 고용 현황

①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 부진 심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자 수는 2023년 4월 기준 388만 1천명으로 전년도 4월보다 13만 7천명 감소하였으며,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게 아닌 ‘쉬었음’²⁾의 청년층 인구는 3만 4천명이 늘어나는 등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15~64세의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2023년 4월 기준 69.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한 반면, 청년(15~29세)³⁾의 고용률은 46.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하였다. 취업자⁴⁾ 수 또한 15~ 64세는 2023년

2) ‘쉬었음’이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한 것과는 달리, 통계청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29세로 정하여 청년실업률 등 고용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4월 기준 2,48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의 취업자 수는 388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7천명 감소하였다.

[연도별 고용률 및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p)

연령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B)	전년동월 대비(B-A)
						'22.4월 (A)			
15세~ 64세	인구	36,796	36,791	36,639	36,498	36,233	36,296	36,020	△276
	취업자	24,511	24,585	24,130	24,280	24,824	24,810	24,860	50
	고용률	66.6	66.8	65.9	66.5	68.5	68.4	69.0	0.6
청년 (15세~ 29세)	인구	9,149	9,060	8,911	8,770	8,567	8,615	8,434	△181
	취업자	3,904	3,945	3,763	3,877	3,996	4,018	3,881	△137
	고용률	42.7	43.5	42.2	44.2	46.6	46.6	46.0	△0.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및 실업자⁵⁾ 수를 살펴보면, 15~64세 실업률은 2023년 4월 기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였고 청년은 6.4%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하였으며, 15~64세 및 청년의 실업자 수 또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018년 이후 최근의 실업률 및 실업자 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년의 실업률(6.4%)은 15~64세 실업률(2.9%) 보다 약 2.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p)

연령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B)	전년동월 대비(B-A)
						'22.4월 (A)			
15세~ 64세	실업자	1,003	979	1,003	918	732	813	742	△71
	실업률	3.9	3.8	4.0	3.6	2.9	3.2	2.9	△0.3
청년 (15세~ 29세)	실업자	408	386	370	326	272	322	267	△55
	실업률	9.5	8.9	9.0	7.8	6.4	7.4	6.4	△1.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5)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의 청년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41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청년층과 30대는 당장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험공부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쉬었음’의 인구가 적게 나타났다. 2018년~2022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청년과 30대의 ‘쉬었음’ 인구의 합이 40대와 50대의 ‘쉬었음’ 인구의 합보다 낮게 나타나거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던 반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청년과 30대가 68만 8천명으로 40대와 50대의 61만 3천명보다 7만 5천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단위: 천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B)	전년동월 대비(B-A)
						'22.4월 (A)			
연령별	계	1,855	2,092	2,374	2,398	2,277	2,219	2,351	132
	청년(15~29세)	313	360	448	418	390	380	414	34
	30대	183	213	254	282	260	257	274	17
	40대	196	223	275	275	263	259	248	△11
	50대	373	426	454	415	386	386	365	△21
	60대 이상	789	870	944	1,008	978	938	1,051	113
연령별 비교	청년+30대(A)	496	573	702	700	650	637	688	51
	40대+50대(B)	569	649	729	690	649	645	613	△32
	A-B	△73	△76	△27	10	1	△8	7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3월 국무조정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⁶⁾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쉼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 11.5%로, 최근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청년의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부가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① 일반사항, ② 주거, ③ 건강, ④ 교육훈련, ⑤ 노동, ⑥ 관계 및 참여, ⑦ 사회인식/미래설계, ⑧ 경제 등 8개 부문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단위: %)

구분	계	성별		연령			지역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수도권	비수도권
경험있다	11.5	11.1	11.9	13.7	10.6	10.9	12.0	88.0
경험없다	88.5	88.9	88.1	86.3	89.4	89.1	10.8	89.2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② 청년 일자리 질의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청년의 실업률 등의 양적인 측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의 일자리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고용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연도별 근로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15세 이상 근로자의 정규직 수는 13만 7천명 증가하고 비중은 4.5% 감소, 비정규직⁷⁾ 수는 154만 2천명 증가하고 비중은 4.5% 증가가 나타난 반면, 청년의 정규직 수는 18만 2천명 감소하고 비중 또한 6.8% 감소, 비정규직 수는 29만 8천명 증가하고 비중은 6.8% 증가하여, 청년층의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에서 집계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합의한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한다.

- 한시적 근로자: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 시간제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연도별 근로형태 현황]

(단위: 천명, %, %p)

구분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b)	증감(b-a)
전체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1,679
	정규직	13,431 (67.0)	13,078 (63.6)	13,020 (63.7)	12,927 (61.6)	13,568 (62.5)	137 △4.5
	비정규직	6,614 (33.0)	7,481 (36.4)	7,426 (36.3)	8,066 (38.4)	8,156 (37.5)	1,542 4.5
청년 (15세~ 29세)	임금근로자	3,682	3,749	3,563	3,711	3,797	115
	정규직	2,406 (65.3)	2,236 (59.6)	2,141 (60.1)	2,150 (57.9)	2,224 (58.6)	△182 △6.8
	비정규직	1,275 (34.6)	1,513 (40.4)	1,421 (39.9)	1,562 (42.1)	1,573 (41.4)	298 6.8

- 주: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2. 조사시점은 각 연도별 8월임
 3. 괄호 내 비율은 연도별 임금근로자 대비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또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계약여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임금근로자 중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140만 7천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반면, 계약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는 2022년 261만 1천명으로 2018년에 비해 40만 7천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1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가진 임금근로자는 2022년 121만 5천명으로 2018년 87만 8천명 대비 33만 8천명 증가하고, 임금근로자에서의 비중 또한 2022년 30.2%로 2018년 21.6%에 비해 8.6%p 증가하였다.

근로형태별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에서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21.2%는 시간제 일자리⁸⁾에 종사하였고, 최근 5년간 청년의 첫 일자리로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의 첫 일자리로 전일제 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은 2018년 82.8%에서 2022년 78.8%로 감소하였다.

8) '시간제 일자리'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청년의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현황(계약여부별)]

(단위: 천명, %, %p)

구분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b)	증감(b-a)
첫 일자리 취업자(A)	4,140	4,168	4,070	4,056	4,117	△23
임금근로자(B)	4,054	4,070	3,963	3,953	4,018	△36
(취업자 대비 비중=B/A)	(97.9)	(97.6)	(97.4)	(97.5)	(97.6)	△0.3
계약기간 정함(C)	1,037	1,211	1,308	1,358	1,407	370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C/B)	(25.6)	(29.8)	(33.0)	(34.4)	(35.0)	9.4
- 1년 이하(D)	877	1,029	1,114	1,189	1,215	338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D/B)	(21.6)	(25.3)	(28.1)	(30.1)	(30.2)	8.6
- 1년 초과(E)	160	183	194	169	192	32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E/B)	(3.9)	(4.5)	(4.9)	(4.3)	(4.8)	0.8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F)	3,018	2,859	2,656	2,595	2,611	△407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F/B)	(74.4)	(70.2)	(67.0)	(65.6)	(65.0)	△9.5
- 계속근무 가능(G)	2,533	2,365	2,225	2,147	2,227	△306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G/B)	(62.5)	(58.1)	(56.1)	(54.3)	(55.4)	△7.1
- 일시적 일자리(H)	485	494	431	448	384	△101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H/B)	(12.0)	(12.1)	(10.9)	(11.3)	(9.6)	△2.4
자영업자(I)	54	51	66	69	78	24
(취업자 대비 비중=I/A)	(1.3)	(1.2)	(1.6)	(1.7)	(1.9)	0.6
무급가족종사자(J)	32	48	41	35	21	△11
(취업자 대비 비중=J/A)	(0.8)	(1.2)	(1.0)	(0.9)	(0.5)	△0.3

주: 조사시점은 각 연도별 5월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의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현황(근로형태별)]

(단위: 천명, %, %p)

구분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b)	증감(b-a)
첫 일자리 취업자	4,140	4,168	4,070	4,056	4,117	△23
임금근로자(A)	4,054	4,070	3,963	3,953	4,018	△36
전일제(B)	3,356	3,264	3,130	3,126	3,166	△190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B/A)	(82.8)	(80.2)	(79.0)	(79.1)	(78.8)	△4.0
시간제(C)	698	806	833	827	852	154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C/A)	(17.2)	(19.8)	(21.0)	(20.9)	(21.2)	4.0

주: 1.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2. 조사시점은 각 연도별 8월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이와 같이 청년의 근로형태가 정규직 비중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 또한 전일제에 종사한 비율은 줄어들고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등 일자리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고용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년 주거 현황

최근 취업이나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지연과 계속되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및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2021년 1인가구의 비중이 66.6%로 2017년 54.2% 대비 12.4%p 증가하였고, 같은 해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중 31.8%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부모비동거 사유는 직장·학교·학원이 멀어서가 69.7%로 가장 많았고,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23.2%),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의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고, 전세 25.8%, 자가 11.5% 순으로 나타나 월세 및 주거관리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일반 가구	2017	27.9	26.1	21.4	19.2	4.3	1.0	100.0	2.49
	2018	28.6	26.7	21.2	18.3	4.2	0.9	100.0	2.46
	2019	29.3	27.3	21.0	17.5	4.0	0.9	100.0	2.43
	2020	30.2	27.9	20.7	17.2	3.4	0.6	100.0	2.38
	2021	31.8	28.0	20.1	16.5	3.1	0.6	100.0	2.33
청년 가구	2017	54.2	19.5	17.1	7.7	1.3	0.2	100.0	1.83
	2018	57.4	18.0	17.2	6.2	1.0	0.3	100.0	1.76
	2019	59.2	18.3	15.1	6.3	1.0	0.2	100.0	1.72
	2020	61.9	21.2	11.5	4.6	0.6	0.2	100.0	1.61
	2021	66.6	18.5	10.4	3.8	0.5	0.1	100.0	1.53

주: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19세에서 만34세인 가구를 가리키며,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년 이전에는 가구주의 연령 기준이 만20세 이상 만34세 이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8.

[청년 1인가구의 부모 비동거 이유]

(단위: %)

구분	합계	부모 비동거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가족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청년 1인가구 (n=5,355)	100.0	69.7	1.0	23.2	2.8	3.3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청년 1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

(단위: %)

구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청년 1인가구 (n=5,355)	100.0	11.5	25.8	52.7	10.0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거주 유형을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주로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에 비하여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비율이 14.2%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거주 유형]

(단위: %)

구분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일반 가구	2017	34.3	48.6	2.2	9.2	1.6	4.0
	2018	33.3	49.2	2.2	9.3	1.7	4.4
	2019	32.1	50.1	2.2	9.4	1.6	4.6
	2020	31.0	51.1	2.1	9.4	1.6	4.8
	2021	30.4	51.5	2.1	9.3	1.5	5.2
청년 가구	2017	41.4	34.8	1.2	7.9	1.5	13.2
	2018	42.4	32.6	1.1	10.2	1.0	12.8
	2019	37.2	34.8	1.4	11.6	1.8	13.3
	2020	38.8	33.9	1.3	11.2	1.3	13.4
	2021	37.5	33.8	1.4	11.7	1.4	14.2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8.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의 평균 1인당 주거면적인 33.9㎡보다 좁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도 2020년 7.5%에서 2021년 7.9%로 증가하고 전국 평균 비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수도권의 청년가구에서 10.8%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10.1%에 비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단위: m²)

구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가구	65.4	66.2	68.1	68.9	68.2	31.2	31.7	32.9	33.9	33.9
수도권	62.4	62.5	65.0	66.3	66.3	28.3	28.5	29.9	31.2	31.4
수도권 외	68.2	69.6	70.9	71.4	70.1	33.9	34.7	35.8	36.5	36.3
청년가구	43.8	43.7	44.2	45.9	43.5	26.6	27.3	27.9	30.9	30.4
수도권	42.3	40.8	41.2	44.1	40.9	26.1	25.4	26.6	29.6	28.4
수도권 외	45.5	46.9	47.7	48.1	46.4	27.2	29.4	29.6	32.4	32.7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8.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가구	5.9	5.7	5.3	4.6	4.5
수도권	6.7	6.8	6.7	5.6	5.5
수도권 외	5.2	4.6	4.1	3.6	3.5
청년가구	10.5	9.4	9.0	7.5	7.9
수도권	10.1	11.5	11.3	10.4	10.8
수도권 외	10.9	7.2	6.3	4.1	4.7

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라 시설 기준으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기준 및 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는 방 1개, 14㎡ / 2인 가구는 방 1개, 26㎡ / 3인 가구는 방 2개, 36㎡ / 4인 가구는 방 3개, 43㎡ / 5인 가구는 방 3개, 46㎡ / 6인 가구는 방 4개, 55㎡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8.

한편, 2021년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0.9%로 일반가구(21.5%)와 유사한 수준이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75.4%로 일반가구(6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구분	중위수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가구	17.0	15.5	16.1	16.6	15.7	21.8	21.1	21.3	20.9	21.5
수도권	18.4	18.6	20.0	18.6	17.8	24.7	24.0	24.6	23.7	24.7
수도권 외	15.2	15.5	13.8	13.7	13.1	16.6	16.4	16.0	16.2	16.3
청년가구	18.8	20.1	17.7	16.8	16.8	21.9	20.5	21.0	20.4	20.9
수도권	22.2	20.8	19.3	20.0	19.7	23.8	22.7	23.1	22.7	23.2
수도권 외	17.2	16.0	16.0	15.1	15.1	18.8	17.5	17.6	16.9	17.4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8.

[일반가구 및 청년가구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부담	조금 부담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해당 없음
일반가구	17.2	44.6	16.8	1.8	19.5
수도권	18.7	44.4	17.8	1.6	17.5
수도권 외	15.3	44.9	15.7	2.1	22.0
청년가구	21.0	54.4	21.2	2.4	1.1
수도권	23.4	52.7	21.0	2.0	0.8
수도권 외	18.0	56.5	21.3	2.8	1.4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8.

또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전세보증금 평균은 2억 1,073만원이고,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 보증금은 평균 2,945만원, 월세는 평균 38만원 수준이며,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부담자는 1순위 응답에서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이 63.7%로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자금’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점유유형별 평균 주거비 실태]

(단위: 명, 만원)

구분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 월세
			보증금	월세	
청년 수	7,641	2,634	3,817	3,817	526
청년 전체	52,966	21,073	2,945	38	32
수도권	72,477	24,814	4,026	45	36
수도권 외	32,376	14,541	1,788	31	30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청년의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청년 전체	21.5	63.7	5.3	6.5	3.0	21.5	19.6	14.2	43.9	0.8
수도권	19.8	64.3	6.0	6.9	2.9	20.9	18.8	14.7	45.0	0.6
수도권 외	23.4	63.0	4.5	6.0	3.0	22.3	20.7	13.5	42.4	1.1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한편, 청년의 주거비 부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자금은 1순위에서 5.3%, 2순위에서 14.2%로 부담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주거인식과 관련된 응답에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1순위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41.0%, 2순위는 전세자금 대출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응답 내용]

(단위: %)

구분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기타
1순위	23.9	41.0	17.3	11.8	4.2	1.0	0.9
2순위	28.5	22.9	19.4	14.6	8.7	5.2	0.6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다. 청년 자산 현황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주거비,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자산 증가율(6.3%)보다 부채 증가율(8.7%)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39세 이하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또한 28.1%로 전체 평균인 16.7%에 비해 높아, 청년의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가구주 연령대별로 본 자산 및 부채 보유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자산 보유액은 2022년 3억 6,333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3%이나, 전체 평균 자산 보유액 증가율과 다른 모든 연령대의 자산 보유액 증가율보다 청년층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9세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2022년 1억 193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7%이며, 전체 평균 부채 보유액 증가율 및 다른 모든 연령대의 부채 보유액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또한 39세 이하는 28.1%이며, 특히 29세 이하는 37.1%로 전체 평균 비율은 16.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전체 및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이나, 39세 이하는 증가하는 추이로, 특히 29세 이하는 9.1%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자산	42,036	43,191	44,543	50,253	54,772	6.8
	부채	7,668	7,910	8,256	8,801	9,170	4.6
	자산 대비 부채	18.2	18.3	18.5	17.5	16.7	△2.1
39세 이하	자산	28,457	29,649	31,849	35,625	36,333	6.3
	부채	7,313	8,125	9,117	9,986	10,193	8.7
	자산 대비 부채	25.7	27.4	28.6	28.0	28.1	2.2
29세 이하	자산	9,892	10,994	10,720	12,140	13,498	8.1
	부채	2,591	3,197	3,479	3,550	5,014	17.9
	자산 대비 부채	26.2	29.1	32.5	29.2	37.1	9.1
30대	자산	31,503	32,638	35,467	40,017	41,246	7.0
	부채	8,088	8,915	10,082	11,190	11,307	8.7
	자산 대비 부채	25.7	27.3	28.4	28.0	27.4	1.7
40대	자산	44,776	46,967	48,686	55,370	59,241	7.2
	부채	10,109	10,689	11,327	12,208	12,328	5.1
	자산 대비 부채	22.6	22.8	23.3	22.0	20.8	△2.0
50대	자산	48,441	49,345	50,903	56,741	64,236	7.3
	부채	8,820	9,321	9,915	10,074	10,763	5.1
	자산 대비 부채	18.2	18.9	19.5	17.8	16.8	△2.1
60세 이상	자산	41,738	42,026	42,701	48,914	54,372	6.8
	부채	5,380	5,222	5,279	5,703	6,045	3.0
	자산 대비 부채	10.9	11.3	11.3	10.0	9.8	△2.6

주: 조사시점은 각 연도별 5월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의 부채 보유액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청년(개인)이나 청년 1인가구의 부채 규모는 주택 관련 부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생활비 부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포함 전체 가구(청년 가구주 가구 + 비청년 가구주 가구) 내 청년(개인)의 부채보유액은 평균적으로 주택관련 부채가 823만원, 학자금 부채가 58만원,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36만원, 생활비 부채 32만원이었으며, 청년을 포함한 모든 가구 유형에서 주택 관련 부채가 다른 부채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부채유형별 평균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가구	청년 (개인)	가구	청년 (개인)	가구	청년 (개인)	가구	청년 (개인)
청년 포함 전체 가구 ¹⁾		91	58	130	36	3,101	823	119	32
청년 가구주 가구	1인가구	89	89	56	74	1,165	1,351	43	50
	청년부부가구 ²⁾	42	26	75	31	8,087	2,983	90	35
	청년+자녀가구 ³⁾	45	36	125	109	7,378	2,947	246	134
	부모동거가구 ⁴⁾	72	24	274	28	2,893	511	200	21
	기타	136	110	107	76	2,607	1,268	131	74

주: 1) 청년 포함 전체 가구: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청년가구주가구+비청년 가구주 가구)

2) 청년부부가구: 부부 모두가 19~34세 청년인 2인 가구

3) 청년+자녀가구: 19~34세 청년 부부 혹은 한부모와 그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그외 다른 가구원 X)

4) 부모동거가구: 청년 또는 청년 배우자의 부모(혹은 한부모)와 그 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3.

이와 같은 청년의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2021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향·유지하고 있어, 부채를 가진 가구나 개인은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청년에게 부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부채 보유액의 대부분이 주택 관련 부채라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 증가는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2020년 8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최근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⁹⁾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⁰⁾

이를 위해, 동 법에서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 대상 실태조사와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9) 「청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023987호), 2019.11.25. 발의, 2020.2.4. 공포.

10) 「청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023987호), 2019.11.25. 발의, 2020.2.4. 공포.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법 조항	세부 내용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 참여와 주도, ② 격차 해소, ③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이후 2023년 정부는 청년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3년 수정안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일자리	◦ 일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전 주기 지원체계 강화 ◦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주거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맞춤형 주택 균형공급(~27년, 58만호)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교육	◦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8,000억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참여·권리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 청년 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 2023.3.29.

나.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시책 등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청년정책은 중앙행정기관 기준 2021년 과제 308개, 예산 23조 8,338억원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과제 376개, 예산 24조 6,493억원, 2023년에는 과제 390개, 예산 25조 4,178억원으로, 청년정책의 과제 수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청년정책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청년정책	과제수	308	376	390	12.5%
	예산	238,338	246,493	254,178	3.3%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청년정책은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32개 부처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20개 중점과제 376개 세부과제가 추진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 148개, 교육 107개, 복지·문화 54개, 참여·권리 40개, 주거 2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예산 기준으로는 주거 8조 8,380억원, 일자리 7조 7,496억원, 교육 6조 7,523억원, 복지·문화 1조 2,219억원, 참여·권리 874억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 및 청년예산]

(단위: 개, 억원)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과제수	청년예산	과제수	청년예산	과제수	청년예산
합 계	308	238,338	376	246,493	390	254,178
I. 일자리	115	82,197	148	77,496	146	58,344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57	63,490	70	56,580	66	34,245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0	12,052	56	12,428	61	15,047
3.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9	6,630	12	8,312	10	8,960
4. 일터 안전망 강화	9	26	10	176	9	93
II. 주 거	24	87,039	27	88,380	30	104,201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8	50,970	9	53,070	10	61,417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6	28,929	7	35,080	8	42,653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4	7,125	5	-	8	52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15	6	231	4	79
III. 교 육	88	56,793	107	67,523	122	70,960
1.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39	6,041	59	13,927	72	19,926
2. 고른 교육기회 보장	15	43,907	13	46,468	17	43,061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0	6,422	31	6,782	29	7,589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423	4	346	4	384
IV. 복지·문화	50	11,623	54	12,219	47	19,786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4	752	7	3,616	6	15,836
2.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360	14	813	15	906
3. 청년 건강 증진	9	6,057	8	2,689	8	2,015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6	4,454	25	5,100	18	1,030
V. 참여·권리	31	685	40	874	45	888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6	11	9	9	8	13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3	4	12	7	2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8	160	9	139	9	197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3	511	18	714	21	677

주: 청년예산은 청년정책 과제 전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을,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 수혜자 중 청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작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의 분야별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를 살펴보면, ① 일자리 분야에서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주요 사업을 통해 구직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이후 2023년에는 주요 사업은 유사하나 기존의 단기 실업대책 중심에서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¹¹⁾

② 주거 분야에서는 2022년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민간주택 등 청년주택을 5.4만호 공급하고, 8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 특별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2023년에는 기존 임대주택 공급 중심에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균형적으로 11.3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청년 대상 초장기 모기지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2023년에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목표는 유지하되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인프라 내실화를 위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2023년에는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1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 2023.3.29.

[청년정책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2022년, 2023년)]

분야	기본계획('21~'25) (2020.12월)	'22년 시행계획 (2022.2.14.)	기본계획 수정(~'25) (2023.3.29.)	'23년 시행계획 (2023.3.29.)
일자리	· 청년구직자 128만명 +α 지원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청년구직자 62.5만명 +α 지원 · 민관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 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 ·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 청년 일경험 8.4만명 지원 ·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민간 공공 일경험 확대 ·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 추진
주거	·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 청년 40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 청년주택 5.4만호 공급 · 청년 8만명 대출지원 + 월세특별지원 15.2만명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공급(~'27년 58만호)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주택 11.3만호 공급(분양 5.3 + 임대 6.0만호) · 청년 대상 초장기 모기지(최대50년) 지원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교육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서민·중산층 가구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94만명) ·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계획 수립('22.上)	·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	·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 *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등 ·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대학의 역할 강화
복지 문화	·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명),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취약청년 긴급자금 : '25년까지 1조원 지원 ·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 청년 발굴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신설('23.6) 및 청년병사 목돈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체계 구축
참여 권리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등	· 청년인재DB 구축 ·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인프라 구축 등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 참여위원회로 지정 ·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지정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폭 확대 ·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온라인 청년 정책 통합시스템 운영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포함한 3조 993억원을 투입하여 총 1,412개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 554개, 복지·문화 294개, 교육 253개, 참여·권리 198개, 주거 113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 1조 1,455억원, 일자리 1조 166억원, 복지·문화 5,878억원, 교육 2,762억원, 참여·권리 734억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과제수 기준으로 경북 186개, 부산 121개, 경남 117개, 제주 94개, 전북 86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예산 기준(국비 포함)으로는 서울 9,280억원, 경기 4,839억원, 전남 2,046억원, 경북 1,629억원, 부산 1,575억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 및 청년예산]

(단위: 개, 억원)

지방자치단체	과제수						청년예산 ¹⁾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21년	'22년
서울	47	12	7	7	14	7	7,316	9,280
부산	121	27	13	24	37	20	979	1,575
대구	72	19	9	15	14	15	1,206	1,460
인천	80	27	9	20	17	7	510	891
광주	84	35	5	14	20	10	690	871
대전	73	35	6	5	16	11	697	937
울산	78	27	13	12	18	8	448	964
세종	48	16	4	5	17	6	211	270
경기	46	15	5	7	13	6	4,243	4,839
강원 ²⁾	44	20	1	14	6	3	497	596
충북	85	44	3	19	9	10	1,075	1,336
충남	69	31	5	8	14	11	1,166	1,076
전북	86	38	5	12	21	10	1,140	1,459
전남	82	32	7	21	12	10	1,677	2,046
경북	186	92	4	38	24	28	1,184	1,629
경남	117	50	9	15	27	16	1,326	1,182
제주	94	34	8	17	15	20	489	582
합계	1,412	554	113	253	294	198	24,854	30,993

주: 1) 지자체 청년예산은 국비·광역·기초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경남)는 청년예산에 기타기관의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2) 강원은 청년정책 과제 예산 중 별도의 청년예산을 미작성하여 과제 총예산으로 작성

자료: 각 지자체별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리

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주거·자산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예산에 청년 지원 재정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2021년 예산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142개 사업에 20조 1,927억원을, 2022년에는 동일한 사업명으로 137개 사업에 23조 3,650억원을, 2023년 예산에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사업(이하 “청년 종합지원 사업”)’으로 131개 사업에 24조 699억원을 편성하였다.

[연도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A)	2023년(B)	전년대비 증감 (B-A)
청년 지원 재정사업	과제수	142	137	131	△6
	예산	201,927	233,650	240,699	7,04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정책’ 내용을 참고하고, 2022년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중점 투자 방향을 반영하여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있다.

2022년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수 기준으로 일자리 80개, 교육·복지 32개, 주거 17개, 자산형성 8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예산 기준으로는 교육·복지 9조 7,228억원, 주거 6조 2,622억원, 일자리 5조 4,300억원, 자산형성 1조 9,501억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제외한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 분야는 2021년 4조 106억원에서 2022년 5조 4,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3년 4조 3,0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일자리 분야의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업(1조 7,374억원), 내일채움공제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분야별 사업수 및 청년예산]

(단위: 개, 백만원)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수	청년예산	사업수	청년예산	사업수	청년예산
합계	142	20,192,657	137	23,365,006	131	24,069,890
1. 일자리	98	4,010,643	80	5,429,962	73	4,305,646
2. 자산형성	5	1,749,011	8	1,950,104	9	2,502,880
3. 주거	12	5,920,655	17	6,262,168	18	6,826,187
4. 교육·복지	27	8,512,348	32	9,722,772	31	10,435,17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는 ① 취업취약계층 청년대상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재추진 등 청년 고용창출,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확대, 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구직지원 등 구직·일경험 기회 부여, ③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양성과 대학인프라 활용 교육훈련 및 SW 채용연계 확대 등 신산업 직업훈련 확대, ④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및 전용 펀드 조성, 폐업 청년 재도전 지원 신설 등 창업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산형성 분야의 경우 ① 청년내일 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 복지부)·청년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금융위)·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금융위) 등 청년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를 마련하고, ② 군 복무 청년들의 전역 후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최대 1,000만원) 및 내일준비적금(1% 이자 지원)을 지원하며, ③ 중소기업 취업·재직 청년들의 경력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비율을 상향하였다.

주거 분야의 경우 ①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청년월세 무이자대출이 신설되었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기간이 '23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②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의 주택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층 중심의 공공자가주택 시범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복지 분야의 경우 ①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②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및 청년들에 대한 심리건강 보호 지원, 장병복지·자기개발 지원 확대, ③ 저소득청년 대상 문화활동비 지원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기존 방향과 유사한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되,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주요 내용(2022년, 2023년)]

분야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일자리	- 청년들의 구직·역량향상·채용기회 확대 (고용창출)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개편·재추진 (구직·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확대, 밀착형 구직지원, 기업 ESG 신규지원 (신산업 직업훈련)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등 인재양성, 대학인프라 활용 교육훈련 및 SW기업 채용연계 확대 (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청년 창업기업전용 펀드 조성, 폐업청년 재도전지원 신설	-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직업훈련)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 확대 (고용서비스) NEET, 대학생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장려금) 취약청년의 고용촉진과 장기채용 유도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
자산형성	-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 지원 확대 (소득맞춤형 지원) 소득구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 연장 등 (장병 자산형성) 장병내일준비금,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일반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장병) 장병내일준비금의 정부 매칭비를 상향
주거	-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취득 기회 확대 (주거비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주택취득 지원) 청년우대형 청년통장 일몰 연장, 소득요건 완화, 공공자가주택 시범 공급	-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등 주거사다리 강화 (내 집 마련)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5.4만호 공공 직접공급 착수 (전세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교육·복지	- 청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기본권 보장 (교육) 국가장학금 단기인상 등 반값 등록금 달성 (복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심리건강	- 병봉급 인상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병역 복무여건) 병 봉급 및 급식단가 인상 등을 통해 희생에 대한 예우 강화

분야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
	보호 지원, 장병복지·자기개발 지원 확대 - (문화) 저소득청년 대상 문화활동비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등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단가·대상 확대, 사례관리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Ⅲ

주요 쟁점 분석

1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예·결산 및 청년정책 관련 계획 분석

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 예·결산 분석

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주거·자산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지원 재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2023년에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 사업(이하 “청년 종합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으로 137개 사업에 청년예산 23조 3,650억원(본예산 기준)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 회계연도 최종예산은 47조 5,786억원이며 이 중 45조 2,40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¹²⁾

[2022회계연도 청년 지원 재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분야	2022년					2023년		
	사업수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수	본예산	청년예산
1. 일자리	80	5,784,619	5,429,962	5,755,202	4,312,497	73	4,909,307	4,305,646
2. 자산형성	8	1,950,104	1,950,104	1,994,072	1,767,580	9	2,501,521	2,502,880
3. 주거	17	3,292,461	6,262,168	29,481,425	29,004,919	18	31,707,428	6,826,187
4. 교육·복지	32	10,303,428	9,722,772	10,347,931	10,155,114	31	11,065,559	10,435,177
합계	137	50,961,612	23,365,006	47,578,630	45,240,110	131	50,183,815	24,069,890

주: 1. 사업수는 세부사업 기준

2. 본예산·최종예산·집행액은 세부사업 전체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경우 세부사업의 예·결산액을,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경우 해당 내역 사업의 예·결산액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의 총 예·결산액으로 작성

3. 청년예산은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 전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의 예·결산금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 수혜자 중 청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사업 외에 대부분의 사업은 청년에 해당하는 집행 내역만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본 분석에서는 청년예산을 포함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총예산을 대상으로 예·결산 현황 분석함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결산 내역(청년예산을 포함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총예산 대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일자리 분야는 청년들의 구직·역량 향상의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80개 사업으로 4조 3,1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② 자산형성 분야는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8개 사업으로 1조 7,676억원이 집행되었다. ③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 취득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17개 사업으로 29조 4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④ 교육·복지·문화 분야는 청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10조 1,551억원이 집행되었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4개 분야 중 사업 수는 일자리 분야(80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 규모로는 주거 분야(29조 49억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부처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총 23개의 부처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2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18개, 국방부가 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액(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총예산 대상)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29조 199억원, 교육부 5조 1,678억원, 국방부 4조 9,876억원, 고용노동부 3조 2,919억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부처별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처	2022년					2023년		
	사업수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수	본예산	청년예산
국토부	18	32944461	6,272,468	29,496,425	29,019,919	19	31,721,028	6,832,187
교육부	7	5,152,055	5,152,055	5,199,819	5,167,791	7	5,172,142	5,166,253
국방부	15	5,279,328	4,699,186	5,273,850	4,987,648	15	6,467,940	5,914,171
고용부	18	4,819,773	4,589,923	4,800,671	3,291,891	18	3,549,840	3,077,089
과기부	10	871,126	806,002	871,126	871,126	10	561,688	499,873
중기부	5	649,754	647,054	640,754	640,614	5	663,127	583,385
문체부	22	347,156	371,314	349,459	346,831	20	393,663	440,660
행안부	2	246,836	246,836	246,818	246,567	1	199,353	198,558
복지부	8	200,791	200,791	238,759	234,777	6	310,186	257,008
농림부	8	141,978	97,224	141,978	141,690	8	181,826	178,270
산업부	1	75,194	75,194	75,194	75,194		0	
외교부	1	52,271	52,271	47,931	47,931	1	42,417	39,982
금융위	1	47,550	47,550	47,550	47,550	2	727,969	712,940
기재부	3	38,076	38,076	53,076	44,593	2	46,539	16,536
특허청	1	26,229	172	26,229	26,164	1	27,764	340
환경부	2	14,380	14,380	14,346	14,160	1	450	16,099
병무청	1	31,098	31,098	31,098	12,551	1	87,895	107,822
식약처	4	6,548	6,608	6,548	6,540	4	6,548	6,789
여가부	4	6,474	6,474	6,474	6,389	4	8,511	6,600
농진청	2	4,050	4,050	4,050	4,050	2	3,510	3,510
국조실	1	4,122	3,918	4,113	3,792	1	8,843	9,242
해수부	2	2,162	2,162	2,162	2,162	2	2,376	2,376
산림청	1	200	200	200	180	1	200	200
합계	137	50,961,612	23,365,006	47,578,630	45,240,110	131	50,183,815	24,069,8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청년정책 예·결산 분석

정부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3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 376개의 과제에 24조 6,4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과제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50조 6,668억원이며 이중 46조 1,93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¹³⁾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분야	2022년					2023년		
	과제수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과제수	본예산	청년예산
1. 일자리	148	130,628	77,496	118,492	94,556	146	102,549	58,344
2. 주거	27	311,267	88,380	299,161	283,756	30	283,777	104,201
3. 교육	107	75,059	67,523	71,999	70,875	122	97,168	70,960
4. 복지·문화	54	14,555	12,218	15,547	11,289	47	23,058	19,786
5. 참여·권리	40	1,870	874	1,469	1,456	45	1,411	888
합계	376	533,380	246,493	506,668	461,931	390	507,962	254,178

자료: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청년정책의 결산 내역(청년예산을 포함한 청년정책의 총예산 대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일자리 분야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을 위한 지원과 일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148개 과제에 9조 4,55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② 주거 분야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27개 과제에 28조 3,756억원이 집행되었다. ③ 교육 분야는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설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107개 과제에 7조 875억원이 집행되었고, ④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의 자산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54개 과제에 1조 1,28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⑤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인프라 내실화를 목적으로 40개 과제에 1,456억원이 집행되었다. 2022년 청년정책은

13)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과제 외에 대부분의 과제는 청년에 해당하는 집행 내역만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본 분석에서는 청년예산을 포함한 청년정책 사업의 총예산을 대상으로 예·결산 현황 분석함

5개 분야 중 과제 수는 일자리 분야(148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 규모로는 주거 분야(28조 3,756억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2년 청년정책의 부처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총 32개의 부처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과제 수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가 42개, 고용노동부가 41개, 국토교통부가 39개, 교육부가 38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액(청년정책 사업의 총예산 대상)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28조 2,611억원, 고용노동부 6조 7,830억원, 교육부 6조 1,02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1,376억원, 중소벤처기업부 9,158억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부처별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부처	2022년					2023년		
	과제수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과제수	본예산	청년예산
과기부	42	17,978	8,646	14,036	11,376	39	11,593	4,865
문체부	42	10,480	8,334	11,523	8,569	48	7,856	4,239
고용부	41	97,563	59,801	88,686	67,830	39	73,200	43,297
국토부	39	310,220	87,170	298,054	282,611	43	282,990	103,236
교육부	38	61,236	54,989	61,705	61,020	44	85,147	60,612
중기부	25	12,701	8,033	9,594	9,158	29	11,144	5,969
농림부	17	8,432	6,968	8,621	8,522	20	9,426	7,786
여가부	15	341	269	341	340	13	372	276
복지부	11	2,028	1,624	2,022	2,006	9	3,285	2,519
국조실	9	20	20	20	20	13	343	343
금융위	9	686	686	836	836	7	7,430	7,430
기재부	8	74	16	74	72	4	75	15
해수부	7	71	48	71	71	6	73	51
산업부	7	2,614	2,577	2,618	2,581	6	1,973	1,933
행안부	6	2,920	2,853	2,920	2,920	4	2,147	2,078
환경부	6	749	541	749	735	5	800	520
식약처	6	68	26	68	68	6	86	75
특허청	6	243	83	243	242	5	226	92
농진청	6	94	94	94	86	6	88	88
산림청	5	75	66	75	73	6	114	70
국방부	4	2,947	2,947	2,719	1,396	5	7,047	7,047
인혁처	4	0	0	0	0	4	0	0
보훈부	4	198	97	197	184	4	277	133
병무청	4	346	29	340	161	4	916	916
문화재청	3	49	49	49	48	3	54	54
통일부	2	386	1	378	378	2	479	5
공정위	2	9	9	9	8	2	9	4
권익위	2	3	2	3	2	2	3	2
방통위	2	92	3	92	87	2	97	3
조달청	2	2	2	2	2	1	2	2
외교부	1	740	493	515	513	7	684	491
방사청	1	17	17	17	15	1	27	27
통계청	-	-	-	-	-	1	0	0
합계	376	533,380	246,493	506,668	461,931	390	507,962	254,17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및 수정안」은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중 상당수가 동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므로, 정부는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출범한 국무총리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 2023년 3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021~2025)」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이후 연도별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과제별로 추진·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 분야별 주요과제]

분야	주요 과제
일자리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청년창업 기술중심·민간주도 전환 및 쉼 주기 지원체계 강화
주 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교 육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출발선 공정 보장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복 지 문 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8천억원 지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참 여 권 리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 지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021~2025)」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수정안(2021~2025)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며 중점 분야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이루어진 반면, 2022년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였고 중점 분야는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비교]

구 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수정안 (2021~2025)	2022년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주 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	기획재정부
발표시점	'21. 12. / '23. 3.	'21. 8.
중점분야	1. 일자리	1. 일자리
	-	2. 자산형성
	2. 주거	3. 주거
	3. 복지·문화	4. 교육·복지·문화
	4. 교육 (5. 참여·권리)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및 2023년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 포함된 부처별 사업을 살펴본 결과, 고용노동부의 '미래유망분야 고졸 인력양성' 사업, 기획재정부의 '그린창업생태계 기반 구축(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 등 일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청년 지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에 포함된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2022년				2023년	
			본예산	청년 예산	최종 예산	집행액	본예산	청년 예산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1037-311)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31,889	31,889	31,889	31,889	29,341	29,341
	미래유망분야 고졸 인력양성(1131-315)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4,200	4,200	4,200	4,200	7,503	7,503
기재부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6231-600)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15,500	15,500	15,500	7,017	30,003	30,003
농림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1160-350)	선임대후매도	-	-	-	-	8,160	8,160
	맞춤형농지지원사업 (1160-350)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	-	-	-	5,448	5,448
문체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731-303)	청년예술가 창작 플랫폼 구축	1,442	1,442	1,428	1,253	1,302	1,302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232-307)	온라인게임물관리 (청년 모니터링단)	1,324	1,324	1,324	1,324	1,330	1,330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133-300)	박물관운영활성화-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1,025	1,000	1,025	981	2,160	2,160
	예술인력육성 (1761-301)	비대면 예술인력 교육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인력 육성 (1761-301)	예술기록물 수집·개방·활용	700	700	700	700	600	600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1335-302)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55,445	55,445	55,445	55,445	49,900	49,900
해수부	청년어촌정착지원 (3347-363)	청년어업인정착지원	1,712	1,712	1,712	1,712	1,926	1,926
	어선청년임대 (3145-303)	어선청년임대	450	450	450	450	450	450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기획재정부의 청년 지원 재정사업은 중점 분야의 구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 내역도 차이가 있어 향후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수정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가 수행할 청년정책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정부는 향후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청년정책의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부터 예산 반영, 성과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 지원 재정사업 간의 중점 분야 분류 및 세부 사업 선정 기준 등을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청년기본법」 제9조¹⁴⁾에 따른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지원 재정사업이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지 않고 매년 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사업실적 관리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 분석

첫째,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의 사업 수 및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계획수립 등의 심의안전만 다룬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청년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관련 사업·과제 수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의 경우 2021년 20조 1,927억원에서, 2022년 23조 3,650억원, 2023년 24조 699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9.2%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또한 2021년 과제 308개, 예산 23조 8,338억원에서 2023년 과제 390개, 예산 25조 4,178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과제수 기준 12.5%, 예산 기준으로 3.3%로 나타났다.

[연도별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청년 지원 재정 사업	예산	201,927	233,650	240,699	9.2%
청년정책	과제수	308	376	390	12.5%
	예산	238,338	246,493	254,178	3.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범위는 특정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범주로 확장되고 있다. 2022년 청년 지원 재정사업은 23개 중앙부처에서, 청년정책은 32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분야별 예·결산 현황(2022~23년)]

(단위: 개, 억원)

분야	2022년					2023년		
	사업수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수	본예산	청년예산
1. 일자리	80	57,846	54,300	57,552	43,125	73	49,093	43,056
2. 자산형성	8	19,501	19,501	19,941	17,676	9	25,015	25,029
3. 주거	17	329,235	62,622	294,814	290,049	18	317,074	68,262
4. 교육·복지	32	103,034	97,228	103,479	101,551	31	110,656	104,352
합계	137	509,616	233,650	475,786	452,401	131	501,838	240,699

주: 1. 사업수는 세부사업 기준

2. 본예산·최종예산·집행액은 세부사업 전체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경우 세부사업의 예·결산액을,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경우 해당 내역 사업의 예·결산액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의 총 예·결산액으로 작성

3. 청년예산은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 전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 수혜자 중 청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정책(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예·결산 현황(2022~23년)]

(단위: 개, 억원)

분야	2022년					2023년		
	과제수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과제수	본예산	청년예산
1. 일자리	148	130,628	77,496	118,500	94,083	146	102,549	58,344
2. 주거	27	311,267	88,380	299,161	283,756	30	283,777	104,201
3. 교육	107	74,748	67,523	71,952	70,781	122	97,168	70,960
4. 복지·문화	54	14,555	12,218	15,547	11,289	47	23,058	19,786
5. 참여·권리	40	1,870	874	1,469	1,448	45	1,411	888
합계	376	533,068	246,493	506,629	461,357	390	507,963	254,178

자료: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15)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15)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은 국무총리가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13조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연 3차례 회의로 출범 이후 4년 동안 9차례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회 안건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역할 중 제1호, 제2호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심의·의결이 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제3호~제7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활동(청년정책의 조정·협력,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지자체간 역할 조정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회차	일자	안건
1차	'20.9.18.	- [심의]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 [심의]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 계획(관계부처합동) - [심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2차	'20.12.23.	- [심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관계부처합동)
3차	'21.3.30.	- [심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관계부처합동) - [심의] 2021년 청조위 민간위원 활동계획(안) - [보고]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보고]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 (고용부)
4차	'21.8.26.	- [심의] 청년특별정책(관계기관합동) - [심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 [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 보고
5차	서면심의	- [심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
6차	'22.2.14.	- [심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심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 [보고]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7차	'22.10.26.	- [심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 [심의] 청년고용정책 방향(고용부) - [심의]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국조실) - [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국토부) - [보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복지부)
8차	'22.12.22.	- [심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완 추진계획 - [심의] 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보고] 청년DB(청년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9차	'23.3.29.	- [심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수정(안) - [심의]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 - [보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계획 - [보고]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 [보고] 청년도약계좌 추진방안 - [보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자료: 청년포털 홈페이지 및 각 회의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립·운영 취지는 청년정책의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조정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무총리(위원장) 및 당연직 정부위원과 1/2 이상의 청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16) 2023년 6월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장, 기

그러나 실제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등 계획 수립의 심의 안전만 다룬다는 점에서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계획수립 - 성과평가 - 환류·조정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점검·분석·평가,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계획수립 이외의 역할에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의 사업 수 및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점검·분석평가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 중 사업내용이 청년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과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대상 사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범위가 폭넓게 나타나고 사업 내용 또한 각기 다른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며, 6명의 민간위원, 14명의 청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은 사업내용이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과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년정책 중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확대하는 사업(과기부, 네트워크인프라산업육성), 지역에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는 조성하는 사업(문체부, 문화시설 확충) 등, 사업내용이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사업내용이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2		
				본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국방부	사회복지	기본급식	1,553,816	1,666,281	1,678,901
			동원훈련	39,668	20,921	19,804
			특수피복	223,243	210,509	192,975
			관사 및 간부숙소	451,364	394,742	342,598
청년정책	과기부	참여 권리	네트워크인프라산업육성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	(40,818)	(40,818)	(40,818)
	문체부	복지· 문화	문화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239,397)	(239,397)	(236,311)
			만화산업 육성 (웹툰융합센터 조성)	(3,000)	(3,000)	(3,000)
	산림청	일자리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시스템현대화)	(5,180)	(5,180)	(5,180)
	행안부	일자리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구축)	(6,155)	(6,155)	(6,155)
	환경부	일자리	댐유지관리 (스마트댐 안전관리,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19,142)	(19,142)	(18,056)

주: 본예산·최종예산·집행액은 해당 세부사업 전체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청년정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의 예산액을 의미하고,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경우 그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인프라산업육성' 세부사업(22년 408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세부사업(22년 예산 2,394억원) 등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연령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용자) 사업의 경우에도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 신혼부부를 제외한 고령자, 무주택자 등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에 포함되었다.¹⁸⁾

[2022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	분 야	세부사업명	2022		
			본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고용부	일자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14,722	13,681	13,68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31,882	131,882	131,650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125,954	125,954	125,669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31,889	31,889	31,889
과기부	일자리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36,208	36,208	36,208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17,960	17,960	17,960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579,700	579,700	579,700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76,500	76,500	76,500
교육부	일자리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	98,400	98,400	98,400
국토부	주거	전세임대경상보조	117,215	139,893	138,328
		민간임대(용자)	1,653,931	1,653,931	1,651,242
		소규모주택정비	12,500	12,500	12,500
기재부	일자리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5,500	15,500	7,017
문체부	일자리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138,800	138,800	138,800
		게임산업 육성	7,465	7,465	7,465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23,885	23,885	21,952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관광두레조성)	12,581	12,581	12,581
	사회·복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60,000	60,000	60,000
환경부	일자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7,222	7,222	7,222

주: 본예산·최종예산·집행액은 해당 세부사업 전체가 청년 지원 재정사업(청년정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의 예산액을 의미하고,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청년 지원 재정사업인 경우 그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8)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22년 147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22년 1,319억원) 등은 청년 대상 예산을 할당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청년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청년정책은 사업내용이 청년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과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예산을 따로 산출하기 어렵거나 청년층이 주 정책대상이 아닌 경우 청년정책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성과관리 체계 분석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그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청년정책 평가는 사업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측면이 있고, 환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에 따르면 2022년 32개 중앙부처가 수립한 376개의 과제를 ① 청년의 참여·주도성, ②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③ 사업계획 이행도 측면에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청년정책('22년 실적) 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

청년의 참여·주도성 (15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40점)	시행계획 이행도 (45점)
- 계획수립 시 청년의견 반영도(5) - 정책집행 중 청년과의 소통 충실성(10)	- 사업목적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반영도(15) - 사업내용의 청년실태 반영도(15) - 성과지표의 청년의 삶 관련성(10)	- 추진계획 이행성과(25) - 성과목표 달성도(20)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정책은 2023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3.3.29.)」에서 정부 내외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의 수립부터 이행, 개선, 평가, 환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각 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 측면보다는

각 사업에 청년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청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평가의 주된 영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청년정책('22년 실적) 평가 중 중앙부처 종합평가 세부지표]

항목	평가지표	측정내용	방법	배점
청년의 참여· 주도성 (15점)	계획수립 시 청년의견 반영도	• 계획수립 시 청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정도	정량	5
	정책집행 중 청년과의 소통 충실성	• 정책집행 과정 중 청년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통기구를 운영·활용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 적절히 검토·대응한 정도	정량	1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40점)	사업목적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반영도	• 사업목적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방향·원칙과 부합하는 정도	정성	5
		• 사업내용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영역별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정도	정성	10
	사업내용의 청년 실태 반영도	• 사업내용이 청년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실태를 충실히 검토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정량· 정성	10
		•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규모를 타당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정량· 정성	5
	성과지표의 청년의 삶 관련성	• 성과지표와 청년의 삶 개선과 직접 관련성	정성	5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정성	5
시행계획 이행도 (45점)	추진계획 이행성과	• 분기별 사업 추진계획 이행여부	정량	10
		• 추진계획 대비 연간 예산 집행률	정량	15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	정량	20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청년층에 관련성이 많은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청년의 참여,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B등급(미흡)의 과제가 적게 나타난 반면, 청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분야의 경우에는 B등급(미흡) 과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청년정책('22년 실적) 중앙부처 종합평가 결과]

(단위: 개)

구분	합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과제수	375	148	27	107	54	39
S등급(우수)	83	30	2	36	9	6
A등급(보통)	224	89	10	61	37	27
B등급(미흡)	68	29	15	10	8	6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청년정책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포함한 것으로, 기존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관리체계와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 체계로의 포함은 기존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청년정책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각 산업영역 또는 전문분야의 인력 양성 사업은 각 분야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 정책인지 혹은 일자리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¹⁹⁾ 주거 영역 또한 주택 관련 사업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형태로, 기존에 수혜대상별로 나누었던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도 통합형 임대주택으로 통합 공급하는 기조로 변경되는 등 기존 사업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급 실적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의 각 사업은 각기 다른 고유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고, 사업별 각자의 평가체계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 카테고리에서의 사업평가는 그 타당성과 각 사업에 모두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2021년도 실적) 청년정책 평가」에서 주거 분야 사업의 경우 공급량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계획 수립시 청년의견 반영 정도, 청년 실태의 반영정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 바 있으나, 2023년 평가에서 또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평가의 환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 일반평가 연구」, 2022.6.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 교육, 복지문화, 일자리, 주거, 참여권리의 5개 영역별 평가결과를 보면 평균점수는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됨
- 각 영역별 등급 분포를 볼 때 탁월해 해당하는 사업의 비율도 참여권리가 20.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17.0%), 일자리(10.2%) 순으로 탁월로 평가된 과제가 많았음. 반면 주거 영역의 겨우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이 0건으로 나타남
- 주거 사업의 경우 공급량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계획 수립시 청년의견 반영 정도, 청년 실태의 반영정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음. 성과목표의 달성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목표치가 청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지 못한 점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 일반평가 연구」, 2022.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그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나, 청년정책 평가는 사업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측면이 있고, 환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정책 성과관리 및 환류 과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1. 일자리 분야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서 일자리 분야는 청년들의 구직·역량향상의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80개 사업에 청년예산 5조 4,300억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 예산은 5조 7,552억원이며 이 중 4조 3,125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에 포함된 일자리 분야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사업이 5,797억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4,518억원,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3,756억원, 고용노동부의 ‘청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3,037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2,393억원 순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 일자리 분야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2022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고용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665,269	665,269	665,309	451,767
	고보기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5,210	995,210	995,210	375,628
	고보기금	청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95,900	12,855	495,900	303,663
과기부	균특회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36,208	36,208	36,208	36,208
	일반회계	기업멤버십SW캠프	12,400	12,400	12,400	12,400
	정진기금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579,700	579,700	579,700	579,700
농림부	농특회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49,307	4,500	49,307	49,298
	농특회계	식품산업인프라강화	870	870	870	870
중기부	중진기금	창업성공패키지	98,015	95,315	98,015	97,875
행안부	균특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9,614	239,614	239,596	239,345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 의견

(1)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 실효성 및 환류 강화 필요

정부는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일자리사업 평가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청년 고용실태 개선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청년 일자리 분야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범주를 구분한 것으로, 실제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구직·역량향상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함에도 두 정책간 일자리 분야로의 포함된 세부(내역)사업이 다르거나, 동일한 사업이 두 정책에서 분야 구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구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업(예시)]

부처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022년 청년정책	
	분야	세부사업명	분야	과제명
고용부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과기부	일자리	기업멤버십SW캠프	교육	기업멤버십SW캠프
	일자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문체부	일자리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광두레 조성)	참여권리	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일자리	만화산업 육성	복지문화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만화산업 육성)
	미포함		일자리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식약처	일자리	규제과학 인력양성사업(R&D)	교육	규제과학 인력양성사업(R&D)
	일자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교육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외교부	일자리	해외봉사단 및 국제 개발협력인재양성(ODA)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사업내용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일자리 분야 사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청년농에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온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22년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 일자리 분야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미포함되는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분야	세부사업명	청년예산	사업내용
국토부	일자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10,300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농림부	일자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41,000	청년농에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소유 부지에 온실 조성
	일자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8,899	청년농 및 영농초기 농업인을 선발하여 농업·농촌 정착지원금 지급
문체부	일자리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출자	138,800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안정적 투자재원 공급
	일자리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23,885	국내외 문화재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의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산업부	일자리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75,194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교통비 지원
외교부	일자리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52,271	개발도상국에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경험을 제공
중기부	일자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0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조합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기금 출자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청년 재정지원 사업 및 청년정책에서 일자리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운영이 이루어지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의 고용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동일한 기준이나 방식으로 성과관리가 어려우며, 정책별·연도별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면 연속적인 성과평가 또한 어렵고 문제점 진단을 통한 정책의 환류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합성·통일성을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²⁰⁾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에서는 각 일자리 사업을 크게는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⑦ 지원고용 및 재활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모아시스템과 고용보험 등 행정DB와 소관부처에서 제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및 근로자의 정보를 연계 분석한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 집행률을 종합하여 정량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20)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 정량평가 지표]

사업유형	정량평가 지표
직접 일자리	- (공통지표) ① 취약계층 참여비율 ② 반복참여율 ③ 훈련서비스 연계율 - (노동시장이행형) 공통지표 + ① 취업률 ①-1 인턴사업장 취업률(구 인턴형 사업의 경우) ② 고용유지율 ③ 취업소요기간 ④ 훈련서비스 연계율 - (사회봉사복지형) 공통지표만 적용
직업훈련	- (공통지표) ① 중도탈락률 - (구직자훈련) 공통지표 + ① 취업률 ② 고용유지율 ③ 취업소요기간 ④ 임금수준 - (재직자훈련) 공통지표 + ① 고용유지율 ②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참여율(시범) - (일학습병행) 공통지표만 적용
고용 서비스	- (공통지표) ① 취업률 ② 고용유지율 - (취업지원) 공통지표 + ① 알선취업률 ② 취업소요기간 ③ 임금수준 -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기타) 세부유형은 정성평가만 진행
고용 장려금	- (공통지표) ①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 공통지표 + ① 기업생존률 ② (종료후)고용증감률 - (고용안정) 공통지표 + ① 기업생존률 - (고용창출) 공통지표 + ① (지원시)고용증감률 - (모성보호) 공통지표만 적용
창업지원	- (공통지표) ①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 ② 고용창출기업비율 - (초기지원) 공통지표 + ① 창업률 - (창업금융) 공통지표 + ① 고용증감률 ② 임금수준 - (사업화지원) 공통지표 + ① 고용증감률 ② 임금수준 - (인프라) 공통지표 + ① 고용증감률 ② 임금수준

주: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할 유형은 정성평가로 진행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청년정책 중 일자리 사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통해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기준이 청년의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시행계획 이행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이행도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청년정책('22년 실적) 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

청년의 참여·주도성 (15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40점)	시행계획 이행도 (45점)
- 계획수립 시 청년의견 반영도(5) - 정책집행 중 청년과의 소통 충실성(10)	- 사업목적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반영도(15) - 사업내용의 청년실태 반영도(15) - 성과지표의 청년의 삶 관련성(10)	- 추진계획 이행성과(25) - 성과목표 달성도(20)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 평가는 실제 청년의 고용실태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 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수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업의 청년 고용 유발효과와 관련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평가 결과와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합성·통일성을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청년 고용실태 개선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한 구직급여 개선방안 필요

정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역전현상 심화, 반복적 수급 인원 증가 등에 따라 청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재수급 기간 설정,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 단가 차별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수급자 총 163만명에게 10조 9,10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 비해 수급자 및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급자 수	1,315,177	1,443,605	1,702,725	1,774,614	1,631,270
지급액	6,454,869	8,091,734	11,855,625	12,062,473	10,910,504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지원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예슬인의 경우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의 경우 24개월간 12개월)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액이 산정되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간 지급이 이루어진다.

[구직급여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분		근로자	예술인 (‘20.12.10 시행)	노무제공자 (‘21.7.1 시행)
지원 요건	지급요건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및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¹⁾	단기 예술인 및 단기 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경우	
지원 수준 및 기간	구직급여 일액 (‘23.1월 이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16,000원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26,600원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주: 1)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 근로소득보다 최저 구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인 반면, 최저 구직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 구직급여가 월 4만 7,240원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저 구직급여의 비교]

구분	최저임금 근로소득 (A)	최저 구직급여 (B)	최저임금 근로소득 - 최저 구직급여(A-B)
1개월(30일) 급여	세후 179만 9,800원 (최저시급 9,620원 기준)	184만 7,040원 (하한액 61,568원 기준)	△47,240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 2,000명으로, 2018년 8만 2,000명에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인원 및 지급액]

(단위: 만명,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회	수급자 수	97	107.5	128.3	132.9	119.4
	지급액	50,370	63,739	93,869	95,466	84,990
2회	수급자 수	26.3	28.2	32.7	34.5	33.4
	지급액	11,212	13,642	19,836	20,123	19,107
3회 이상	수급자 수	8.2	8.6	9.3	10.0	10.2
	지급액	2,940	3,489	4,800	4,989	4,98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구직급여의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반복적 수급 인원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청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청년 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뚜렷한 휴식 이유도 없이 일하지 않는 ‘쉬었음’의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41만 4천명으로, 청년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단위: 천명, %, %p)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B)	전년동월 대비(B-A)
						'22.4월 (A)			
연령별	계	1,855	2,092	2,374	2,398	2,277	2,219	2,351	132
	청년(15~29세)	313	360	448	418	390	380	414	34
	30대	183	213	254	282	260	257	274	17
	40대	196	223	275	275	263	259	248	△11
	50대	373	426	454	415	386	386	365	△21
	60대 이상	789	870	944	1,008	978	938	1,051	113
연령별 비교	청년+30대(A)	496	573	702	700	650	637	688	51
	40대+50대(B)	569	649	729	690	649	645	613	△32
	A-B	△73	△76	△27	10	1	△8	7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구직급여의 역전현상 심화, 반복적 수급 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청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재수급 기간 설정,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 단가 차별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구직급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개별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첫째, 반도체인프라 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30시간 내외의 단기 교육 및 반도체 입문 단계 교육 중심으로 취업 연계 재학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도체 현장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²¹⁾

반도체인프라 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반도체 장비를 보유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대응한 재직자 및 채용 연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취업 연계 목적의 19개 재학생 교육과정과 32개 재직자 교육과정 등 총 51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별 수료인원은 총 1,874명이며, 이 중 기업재직자는 944명, 학부 재학생은 930명이다. 학부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취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 3~4학년 학생 등 졸업예정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2022년 학부재학생 교육수료인원 930명 중 2023년 5월 기준으로 70명(7.5%)이 취업으로 연계되었다. 교육 분야별 취업률은 설계 분야 4.2%, 제조 분야 10.6%, 후공정 분야 4.6%로 나타났다. 다만 학부재학생 교육수료인원 중 대학 4학년 및 대학졸업생 등 취업준비생 202명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70명(35.0%)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으며, 교육분야 취업률은 설계 분야 21%, 제조 분야 50%, 후공정 분야 13%이다.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의 2022년 교육 및 취업 인원 현황]

(단위: 명, %)

교육분야	교육 과정수	교육수료인원			학부재학생 중 취업인원(B)	취업률 (B/A)
		전체	기업재직자	학부 재학생(A)		
설계	20	617	256	361	15	4.2
제조	21	922	440	482	51	10.6
후공정	10	335	248	87	4	4.6
합계	51	1,874	944	930	70	7.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다른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인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사

21)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47~52 참조.

업에서는 2022년에 학부 재학생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2개 교육과정을 4개월 동안 운영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2022년 교육수료자 62명 중 취업자가 36명(58.0%)으로 반도체인프라활용인력양성 사업에 비해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사업의 취업자 대상 2022년 교육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료자		학부재학생 및 졸업자 중 취업자(B)	B/A
		반도체산업 재직자	학부재학생 및 졸업자 (A)		
디지털 칩설계 트랙	2022.08~2022.11	0	33	27	81.8
아날로그 칩설계 트랙	2022.08~2022.11	0	29	9	31.0
합계		0	62	36	5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은 학부재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입문 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동 사업의 학부재학생 대상 채용연계 교육과정은 교육 수준에 따라 입문·기초·심화 과정으로 구분된다. 2022년 운영된 19개 채용연계 교육과정은 입문 과정 16개, 기초 과정 3개이다. 학부재학생 수료자 920명 중 입문과정 수료자가 802명(87.2%)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입문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동 사업의 기획 당시 신소자기반 신규측정 분석법, 반도체 공정실습 등 3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에는 심화과정이 운영되지 않았다.

[반도체인프라활용인력양성 사업의 2022년 교육인원 현황]

(단위: 개, 명)

교육수준	교육과정수	교육시간별 교육인원			
		20~30시간	35~40시간	40시간 초과	합계
입문	16	215	582	5	802
기초	3	0	118	0	118
심화	0	0	0	0	0
합계	0	215	700	5	920

주: 각 과정을 중복 수료한 인원이 있어 전체 수료인원과 교육수준별 수료인원에 차이 발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학교별 보유 장비 및 교육 내용이 상이하며, 장비를 활용한 실습이후 장비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과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2022년에는 교육생의 실제 수요와 일치하는 교육 운영을 위하여 심화과정을 당초 계획상의 예비취업자 과정이 아닌 재직자 과정으로 대체 개설한 것으로 설명한다. 당초 예비취업자 교육과정에 심화과정을 계획하였으나, 기초과정 운영 후 실시한 교육생 만족도조사에서 기초과정 내용도 어려워하는 교육생이 많아 심화과정을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예비취업자 과정 교육생 모집 결과 비전공자가 많았고, 비전공자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단되어 입문 및 기초과정 운영에 집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²⁾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은 입문 과정 중심으로 학부재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과정별로 5~10일(평균 30시간) 동안 운영한 반면,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사업은 교육과정별로 4개월 동안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다. 반도체인프라활용인력양성 사업에서는 단기 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업에 비해 취업 성과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입문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효과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

22)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사업의 학부재학생 교육 신청자 중 전기, 전자공학과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전공 수강자는 전체의 44%(반도체 전공은 39명 전체 3.4%), 비전공자는 56%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전공자 39명을 제외하면 96%가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낮은 교육생으로 1차년도 사업임을 감안하여 입문강의를 중심으로 운영이 필요했으며, 향후 교육연차를 감안하여 기초·중급·고급 등의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을 통한 반도체 인력 공급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와 중장기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 인력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초 및 심화 단계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멤버십SW 캠프 사업을 통한 교육생의 취업 성과가 당초 목표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컨소시엄별 멤버십 기업이 채용 약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취업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²³⁾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SW분야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기업에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은 관련 협회·단체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추진되며, 교육생 중 멤버십 기업에서 제기한 채용 수요 인원의 50% 이상이 채용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대상은 SW분야의 역량을 갖춘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이며, 교육은 세부 과정별로 다르나 8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SW분야 중·고급 과정과 기업 수요 프로젝트 수행 등이며, 교육생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현금)를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연간 약 600명씩 2025년까지 SW인재 2,400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174~179 참조.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교육대상	SW분야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 600명
교육기간	8개월 내외(과정별 상이)
교육내용	중고급 교육, 기업 수요 프로젝트 수행
취업연계	취업연계 지원 (컨소시엄별 수료인원의 75% 이상 채용, 멤버십 기업 수요제기 인원의 50% 이상 채용)
교육생 지원	월 30만원 한도 현금 지급
교육방식	오프라인
교육비용	국고 100% (현물매칭 포함)
인력양성 목표	연간 600명 (2025년까지 2,400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의 2022년 교육과정 31개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은 2023년 7월로, 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2023년 6월초까지 종료된 교육과정 28개의 교육생 수료 현황 및 취업 실적 등을 살펴본 결과, 총 교육생 633명 중 89.3%인 565명이 수료하였고, 10.7%인 68명은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수료생 565명 중 303명이 취업하여 전체 취업률은 53.6%이고, 멤버십 기업으로 취업한 교육생은 175명, 그 외 기업으로 취업한 교육생은 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업멤버십 SW캠프 교육생 취업 성과]

(단위: 명, %)

주관기관	수료 현황			취업 현황				
	합계 (C= A+B)	수료 (A)	미수료 (B)	합계 (f= d+e)	멤버십기업			그 외 기업(e)
					실적 (d)	약정 (D)	d/D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80	247	33	152	119	140	48.2	33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103	89	14	35	17	52	19.1	18
(사)디엠씨코넷	106	98	8	45	9	53	9.2	36
(사)IT여성기업인협회	144	131	13	71	30	72	22.9	41
합계	633	565	68	303	175	317	31.0	12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① 컨소시엄별 수료인원의 75% 이상 채용, ② 멤버십 기업 교육과정별 인원(688명)의 50%(344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초 기준 취업률은 수료인원(565명)의 53.6%로 75%에 미치지 못하고, 멤버십 기업 채용인원(175명)은 수료인원(565명)의 31.0%로 목표(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90% 이상이 종료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개 컨소시엄 중 교육과정 개설이 더 많이 지연되었던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과 (사)디엠씨코넷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의 멤버십 기업으로의 취업률이 약정한 수준 대비 각각 19.1%, 9.2%로 저조한 상황이고, 그 외 기업에 채용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39.3%, 46.0%로 지속적인 채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동 사업은 공고 시부터 각 멤버십 기업이 3명 이상의 채용 수요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수료인원의 50% 이상에 대해 해당 기업이 채용을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확약서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경영상황에 따라 채용계획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멤버십 기업이 확약서의 내용대로 채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교육기관과 멤버십 기업이 SW역량을 보유한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실기테스트, 면접전형의 절차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멤버십 기업에 채용의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멤버십 SW캠프에 참여한 멤버십 기업들이 채용 약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채용을 독려하는 등 취업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2. 자산형성 분야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서 자산형성 분야는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8개 사업에 청년예산 1조 9,501억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조 9,941억원이며 이 중 1조 7,67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자산형성 분야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사업이 8,41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사업이 3,887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이 2,765억원, 국방부의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이 904억원, 보건복지부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이 740억원 순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 자산형성 분야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2022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고용부	일반회계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875,468	875,468	875,468	841,878
	고보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34,414	434,414	434,414	388,682
국방부	일반회계	병내일준비지원	219,009	219,009	219,009	90,386
금융위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희망적금)	47,550	47,550	47,550	47,550
기재부	복권기금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21,000	21,000	36,000	36,000
병무청	일반회계	병역의무자지원	31,098	31,098	31,098	12,551
복지부	일반회계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6,048	36,048	74,016	74,016
중기부	일반회계	인력유입인프라조성	285,517	285,517	276,517	276,517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 의견

(1)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첫째,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는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국가정책적 목표로서의 타 분야와의 연계가 미흡하게 나타나며, 자산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주거 안정, 결혼·출산지원, 창업, 교육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연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개인소득별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0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 /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의 경우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80%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할 계획					
적금방식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5년 적금상품 ◦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지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月)	기여금 지급한도 (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6,300만원 ↓		-	-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혜택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형성 관련 사업은 자산형성 그 자체를 재정정책의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다른 정책목표(저소득층 자립 지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를 위한 유인체제로 작동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특별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광역시의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사업의 경우에도 취약 청년계층의 자립,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확보, 특정 지역의 청년 계층 지원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 유인체계 중 하나로 장려금 또는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기존 주요 청년 자산형성사업 현황(예시)]

상품명	소관	상품 목적	의무 가입기간	만기시 수금액 (만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청년 지원	3년	① 최대 1,478 ② 최대 739 (금리 2.0% 가정)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자산형성 지원	2년	1,2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2년 또는 3년	약 500~1,100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	장애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900~1,300
청년희망 날개통장	부산광역시	부산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700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광역시	부산시 거주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18개월, 24개월, 36개월	약 1,100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대구시 단기일자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6개월	약 250
청년13통장	광주광역시	광주시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10개월	약 200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시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1,100

자료: 금융위원회

즉, 현재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용은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자산 형성 이후에 국가정책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지출로 이어진다면, 국가재정의 투입 효과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 자산형성 사업이 19~3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전 세대 대비 청년이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산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까지 자산형성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며 정책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우려 등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는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국가정책적 목표로서의 타 분야와의 연계가 미흡하게 나타나며, 자산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추진시 임산부, 유자녀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청년의 결혼·출산지원, 주거 안정, 창업, 교육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총급여 3,600만원의 가입 기준을 총급여 6,000만원으로 완화시키고 납입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 비해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보다 정책 효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청년세대 간 역진성·형평성 관련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기여금(월 최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월 최대 70만원	월 최대 50만원
정부지원금	3~6%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만기 지급)
적금방식	5년	2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와 같이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가입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 비해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보다 정책 효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세전 월급여 200만원)인 청년은 총급여가 6,000만원(세전 월급여 500만원)인 청년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인 70만원을 납입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정부기여금이 더 지급됨으로써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청년희망적금이 추진된 이후 2023년 3월까지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입기간 동안 286만 8,000명이 가입을 하고 적금 가입시 평균 납입액은 38만 4,000원이었으나, 2023년 3월에는 228만 5,000명이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평균 납입액은 42만 1,000원으로 나타나, 가입 당시 대비 가입자는 58만 3,000명이 줄고, 평균 납입액은 37,000원 늘어났다. 이와 같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평균 납입액은 증가한 것은, 일부 저축여력이 없는 가입자들이 만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기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 및 평균 납입금액 현황]

구분	가입시 (22.2.21~3.4)	2022.3월	2022.6월	2022.9월	2022.12월	2023.3월
가입자 수	286.8만명	284.4만 명	270.1만명	256.7만명	241.4만명	228.5만명
평균 납입금액	38.4만원	41.1만원	41.3만원	41.6만원	41.9만원	42.1만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소득구간에 차별없이 동일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기여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저소득층이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정부기여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여금 구조를 설계하는 등 역진성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월 납입한도	기여금 월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월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6,300만원 ↓		-	-	-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총급여가 3,600만원을 초과하고 6,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까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총급여가 더 많을 경우 저축여력이 보다 많아지고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로 인한 정책 효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중도해지자가 68만 5천명으로 중도해지율이 23.7%로 나타났으며, 납입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40.3% 순으로 나타났고, 납입한도 50만원을 납입한 청년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²⁴⁾

24) 금융위원회에서는 해당 통계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전산 연계를 바탕으로 단순 취합한 것으로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확정된 수치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대별 중도해지율(2023년 5월말 기준)]

(단위: %)

구 분	전체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50만원
중도해지율	23.7	49.2	48.1	43.9	40.3	14.8

주: 해당 통계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전산 연계를 바탕으로 단순 취합한 것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님

자료: 금융감독원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총급여 3,600만원의 가입 기준을 총급여 6,000만원으로 완화시키고 납입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 비해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보다 정책 효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청년세대 간 역진성·형평성 관련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장병 자산형성 사업(병내일준비지원)의 사업구조 개선 필요

장병 자산형성 사업인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회계연도 집행실적이 41.3%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기 후 원리금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 병사의 적금 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사업구조 단순화, 가입 및 해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²⁵⁾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병사들이 전역 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의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시·중 14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적금상품이다. 동 적금에 대해 국가는 이자 1%를 지원하고, 매칭지원금으로 원리금의 71%를 만기 시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협약 은행들은 적금 가입기간별로 연 4~5%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가입한도는 은행별로 월 20만원, 개인별로 월 40만원²⁶⁾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대구, 경남, 수협, 광주, 전북, 제주, 우체국 등 14개 은행
가입기간	· 육군·해군·해병·의경·상근예비역·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6~18개월 · 공군: 6~22개월 · 사회복무요원: 6~21개월 · 대체복무요원: 6~24개월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원
혜택	· 은행이자 최대 5% + 국가이자지원 1% · 이자소득비과세 · 매칭지원금: 원리금의 7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5)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pp.222~226 참조.

26) 즉, 최대 4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은행의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향후 동 사업을 매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2025년까지 매칭지원율을 100%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납입한도액을 5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전역 시 최대 1,025만원(월 환산 5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2025년 매칭지원율 상향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33%	71%	82%	100%
납입한도액	40	40	47	54
월별 지원금액 환산(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 (최대)	254.5	541.2	733.4	1,025.9

자료: 국방부

그러나 국방부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회계연도 집행률은 41.2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매칭지원금 집행 대상 인원을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집행 인원이 약 20만 3,000여명으로 저조하였고, 평균 적립액도 예상치인 4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전역 이후 전역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해지처리를 하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2년 말 전역자와 전역 이후에도 적금계좌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칭지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동 사업의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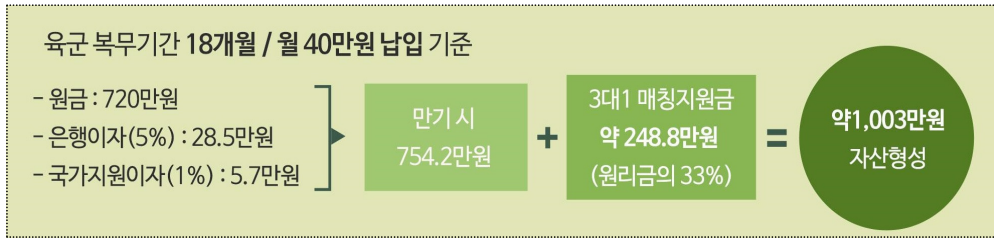
또한 각 은행별 및 가입 기간별로 계좌별 이자율이 다르고, 매년 원리금에 적용되는 매칭률이 변경²⁷⁾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한 장병들이 만기 시 얼마를 수령 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7)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칭 비율이 매년 상승할 예정에 있다.

[매칭지원금 지원을 상향 계획]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33%	71%	82%	100%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 ('22년 기준)]



주: 3대1 매칭지원금이란 적금 원리금이 3일 때 지원금을 1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뜻함.
자료: 국방부

한편, 병사 입장에서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적립한도액(4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행별 한도가 20만원인 관계로 2개의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품개발 당시 5%라는 고금리로 출시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은행이 신규고객 유치와 그 신규고객 유치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은행이 보장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은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적립한도액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대구, 경남, 수협, 광주, 전북, 제주, 우체국 등 14개 은행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원
혜택	금리 4~5%로 은행별 상이, 이자소득 비과세

자료: 국방부

2022년 12월 말 기준 내일준비적금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37만원인데,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0만원의 적립금을 채우지 않는 인원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각 은행에 2개의 적금계좌를 개설한 인원이 한 은행에는 2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한 은행에는 20만원 미만의 적금을 든다고 보기보다는 은행 2곳에 각각 20만원씩 최대한도를 채우는 사람과 은행 1곳에만 계좌만 개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⁸⁾

즉, 2개의 은행에 별도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는 이러한 가입 편의상 문제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이며, 장병이 40만원의 적금한도액을 모두 채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부터는 납입한도액도 47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은행별 20만원의 납입 한도액이 유지된다면, 장병이 3개의 계좌로 나누어 적금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개인별 개설계좌가 많을수록 늘어날 병사의 불편비용과 사업 집행 상의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가입 및 해지체계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현재 계획된 예산 총액의 범위에서 매월 병사가 적립하는 금액에 매칭하여, 국가가 매월 추가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사업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병사가 사업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적금 가입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복잡성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② 장병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행별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과 적금 해지 시 비대면 해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금 가입 장병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8)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은행 1곳만 가입하는 사람은 15%, 은행 2곳에 가입하는 사람은 85%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3. 주거 분야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서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 취득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17개 사업에 청년예산 6조 2,622억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29조 4,814억원이며 이 중 29조 4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에 포함된 주거 분야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뉴:홈),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급과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청년에게 월세를 특별지원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주거 분야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사업이 8조 5,217억원, ‘다가구매입임대(용자)’ 사업이 5조 4,403억원, ‘전세임대(용자)’ 사업이 4조 6,612억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이 2조 9,467억원 순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 주거 분야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2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국토부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용자)	5809,250	1,240,000	5,459,932	5,440,305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00	1,116,000	2,971,050	2,946,677
	주택기금	민간임대(용자)	1,653,981	540,520	1,653,981	1,651,242
	주택기금	분양주택(용자)	316,250	9,000	203,100	201,707
	주택기금	전세임대(용자)	4,532,791	1,018,791	4,775,041	4,661,183
	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9,530,000	247,685	8,530,000	8,521,691
	일반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149	82,149	82,149	82,149
	주택기금	통합공공임대(용자)	965,615	247,425	168,866	168,482
	주택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857,477	219,716	272,753	196,201
	주택기금	행복주택(용자)	1,618,814	628,503	1,319,799	1,318,195
	주택기금	행복주택(출자)	1,095,258	425,233	775,293	566,313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 의견

(1)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뉴:홈(공공분양주택) 사업 추진 필요

정부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23년부터 '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호(청년층 3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22년 연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사업 승인 실적은 13,305호로 '23년 공급계획(7.6만호) 대비 17.5%수준으로 나타나, 공급 목표 달성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2년 10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및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50만호 중 34만호는 청년층에, 16만호는 무주택 중장년층에 공급이 이루어진다.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

구 분	합계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무주택자
'18~'22(실적)	14.7만호	-	8.0만호	2.1만호	4.6만호
		청년층 약 9.7만호			청년 외 약 5만호



'23~'27(목표)	50.0만호	5.25만호	15.5만호	11.25만호	18만호
		청년층 약 34만호			청년 외 약 16만호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2022.10.26.

동 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50만호는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겠다는 계획이다. ① ‘나눔형’은 낮은 분양가와 장기모기지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고한 것으로,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세 70%로 공급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②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며, ③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을 받는 것으로,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및 특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2022.10.26.

그러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청년층 3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나, 실제로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⁹⁾

[지역별 연도별 공공분양 공급 계획]

(단위: 만호)

구분	합계					
		'23	'24	'25	'26	'27
합계	50.0	7.6¹⁾	9.0	10.0	10.4	13.0
수도권	35.6	5.2	6.0	7.0	7.4	10.0
서울	6.0	0.5	0.5	1.3	1.7	2.0
비수도권	14.4	2.4	3.0	3.0	3.0	3.0

주: 1. 인허가 기준

1) '23년 7.6만호 중 5.4만호는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포함한 유형(나눔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2022.10.26.

29)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현재 각 지구별로 지구계획 수립 및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 향후 5년간 50만호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공공분양주택 실적은 총 1만 3,305호³⁰⁾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2023년 공급 예정인 7만 6,000호의 17.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실적]

(단위: 호)

유형	사업지구	호수	사업승인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일반형	공주월송	518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군산신역세권	660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군산신역세권	899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남양주왕숙	587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남양주왕숙	546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대전둔곡	575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부천대장	473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양주회천	815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오산세교2	435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울산다운2	890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청주동남	650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충남내포	1,062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충남내포	864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충북혁신	934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평택고덕	512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화성태안	688	2022-12	2024-12	2027-6
일반형	부산강동	363	2023-3	2025-3	2027-9
일반형	평택고덕	479	2023-3	2025-3	2027-9
나눔형	남양주양정	279	2023-3	2025-3	2027-9
나눔형	남양주양정	319	2023-3	2025-3	2027-9
일반형	고양창릉	494	2023-6	2025-6	2027-12
일반형	수방사부지	263	2023-6	2025-6	2027-12
합계		13,305	-		

주: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은 사업계획서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30)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인 13,305호는 LH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주택에 한정된 것이며, 지자체 물량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적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주택 50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공공택지의 조성·확보, 신도시 등의 경우 교통시설 등 기초 인프라 정비 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위례 신도시의 입주가 이루어졌으나, 2025년에 위례트램, 2027년에 위례신사선이 개통 예정으로 현재까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실적이 목표 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점, 공공분양주택 50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조성·확보, 교통시설 등 기본인프라 정비까지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신혼부부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필요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의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낮고 공가율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기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유형	사업개요	'23년 공급 규모
통합공공임대	·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자격 ※ 기존 유형(행복·영구·국민) 통합	1.2만호
(특화) 일자리연계형	·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	-
매입임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	2.1만호
(특화) 청년 역세권	·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
(특화)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
(특화) 기숙사형	·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	-
전세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입주자부담 100~200만원	1.8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 85% 주택공급	0.9만호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3.3.29.

그러나 2022년 매입임대주택³¹⁾ 및 전세임대주택³²⁾의 임대 실적을 보면, 신혼부부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먼저 2022년 LH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모집한 신혼부부, 청년, 기숙사 유형에 대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공고 결과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I·II 유형은 청년역세권이나 기숙사형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신혼부부 I 유형은 45.3%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유형별 재고량 및 임대 현황(LH)]

(단위: 호, %)

유형	재고량 (A)	개보수 등 (B)	임대 가능 (C=A-B)	임대	공가		전체 재고 대비 공가율(D/A)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D)	
일반	103,864	1,854	2,273	96,846	895	1,996	1.9%
신혼부부I	19,143	465	1,103	16,314	299	962	5.0%
신혼부부II	13,185	383	721	11,364	220	497	3.8%
청년	18,512	804	2,275	14,663	368	402	2.2%
다자녀	1,155	30	188	812	55	70	6.1%
공공전세	2,107	76	344	1,286	25	376	17.8%
계	157,966	3,612	6,904	141,285	1,862	4,303	2.7%

주: LH 관리물량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31)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용자·출자)' 사업을 통해 수급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은 용자 50%, 출자 45%, 입주자 5%이다.

32) 전세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용자)' 사업을 통해 수급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를 95~100% 지원한다.

[2022년 각 유형별 공급 및 계약 현황]

(단위: 호, %)

구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청년역세권	기숙사형	공공전세
공급호수(A) ¹⁾ (22년 매입분)	5,200 (1,111)	2,075 (236)	5,593 (1,327)	216 (0)	1,432 (366)
신청자(B) ¹⁾	10,334	14,732	163,348	10,359	28,603
계약자(C) ²⁾	2,356	1,995	5,030	591	967
경쟁률(B/A)	198.7	710.0	2,920.6	4,795.8	1,997.4
계약률(C/A)	45.3	96.1	89.9	273.6 ³⁾	67.5

주: 1) '22년 매입호수 중 공급한 호수는 별도 기재하고, 신청률·계약률 작성을 위해 정기공고 모집호수의 총합 작성

2) 계약자는 해당 유형 신규계약자의 총합(해약 및 재임대 물량 포함)

3) 연말에 모집한 주택은 다음 해에 계약체결되며, 공고 시 공급호수의 3배수만큼 예비자를 선정하고 해약 또는 신규 매입분 발생 시 예비자에게 순차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률 100% 초과하는 경우 발생

자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I 유형의 경우 시세의 30~40% 이내에서 임대료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이 적다는 이점은 있지만, 동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대부분 면적이 작은 다가구주택으로 신혼부부의 선호가 떨어진다는 점, 동 사업보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 쉽고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는 점, 신혼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가나 신혼희망타운으로 대표되는 공공분양 물량 또한 계획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입주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혼부부 I 유형의 매입기준단가는 2022년 1.7억원, 2023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요하게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신혼부부의 53.2%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있고,³³⁾ 수도권 우량 입지 중 매입이 가능한 주택은 부족하여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이 주로 매입될 수 있다.

신혼부부 I·II 유형의 전용면적별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개율을 살펴보면, 면적이 작을수록 공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혼부부 I 유형의 경우 40~60㎡의 면적이 11,490호로 재고 대부분을 차지한다.

33)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2.12.12.

[2022년 말 기준 전용면적별 재고량 및 임대 현황(신혼부부 I)(LH)]

(단위: 호, %)

구분	재고량 (A)	개보수 (B)	임대 가능 (C=A-B)	임대	공가			6개월 이상 공가율 (D/A)
					계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D)	
20㎡ 미만	5	0	0	4	1	0	1	20.0%
20~40㎡	1,315	31	119	1,080	116	68	48	3.7%
40~60㎡	11,400	298	877	9,714	899	163	736	6.4%
60~85㎡	6,247	131	561	5,445	241	66	175	2.8%
85㎡ 초과	86	5	11	71	4	2	2	2.3%
계	19,143	465	1,568	16,314	1,261	299	962	5.0%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말 기준 전용면적별 재고량 및 임대 현황(신혼부부 II)(LH)]

(단위: 호, %)

구분	재고량 (A)	개보수 (B)	임대 가능 (C=A-B)	임대	공가			6개월 이상 공가율 (D/A)
					계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D)	
20~40㎡	688	18	115	520	53	8	45	6.5%
40~60㎡	6,373	200	481	5,422	470	87	383	6.0%
60~85㎡	6,124	165	508	5,422	194	125	69	1.1%
계	13,185	383	1,104	11,364	717	220	497	3.8%

자료: 국토교통부

② 다음으로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안내를 통보한 건수 대비 실제 계약체결까지 이어진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유형 및 신혼부부 유형의 비율이 각각 30.9%, 47.3%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LH)]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일반	계약통보안내건수(A)	27,325	30,289	25,136	39,648
	계약건수(B)	15,305	14,610	12,096	12,256
	계약률(B/A)	56.0	48.2	48.1	30.9
청년	계약통보안내건수(A)	25,248	22,314	29,817	15,947
	계약건수(B)	13,288	14,416	15,350	17,787
	계약률(B/A)	52.6	64.6	51.5	111.5 ¹⁾
신혼부 부	계약통보안내건수(A)	18,761	33,680	18,360	17,026
	계약건수(B)	12,890	14,162	9,966	8,053
	계약률(B/A)	68.7	42.0	54.3	47.3

주: 1) 신청건수 및 입주자선정건수는 당해연도 공고 기준이며, 전세임대 특성 상 신청연도와 당첨 및 계약연도가 다른 경우 발생(2021년 신청 및 당첨 → 2022년 계약)
 - 특히, '21년에는 전세임대주택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2회 변경('21.7월 청년 2천호 증, '21.11월 청년 3천호 증)되어 청년 전세임대 추가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22년도에 8,846건 계약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임대절차의 번거로움, 낮은 전세금 지원한도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추세로 전세매물이 많지 않고, 전세임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전세임대 진행 시 필요한 권리분석 절차나 권리분석 이후 계약체결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집주인, 본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모두 계약에 참여하는 등 전세임대와 관련된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물색기간 내(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에 적합한 주택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

또한 전세임대(용자) 사업은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전세 시세를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신혼부부 I 유형은 수도권에서 1.45억원, II유형은 2.4억원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지원한도에서 접근 가능한 전세임대 주택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유형별 전세금 지원한도(2023년 기준)]

구분	용자한도			입주자 부담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임대보증금	월세
일반·고령자	1.30억원	0.90억원	0.70억원	지원금의 2~5%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이율 적용 (연 1~2%)
신혼Ⅰ	1.45억원	1.10억원	0.95억원	지원금의 5%	
신혼Ⅱ	2.40억원	1.60억원	1.30억원	지원금의 20%	
청년				100~200만원	
역세권 (1인,60㎡이하)	1.20억원	0.95억원	0.85억원		
세어형 (2인,70㎡이하)	1.50억원	1.20억원	1.00억원		
세어형 (3인,85㎡이하)	2.00억원	1.50억원	1.20억원		
다자녀	1.55억원	1.20억원	1.05억원	지원금의 2%	

주: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한도 상향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대상별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유형, 면적 등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4. 교육·복지·문화 분야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서 교육·복지·문화 분야는 청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32개 사업에 청년예산 9조 7,228억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들을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을 경우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0조 3,479억원이며 이 중 10조 1,55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의 교육·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4조 6,737억원, 국방부의 ‘병인건비’ 사업이 2조 2,524억원, 국방부의 ‘기본급식’ 사업이 1조 6,789억원 순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 교육·복지·문화 분야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2			
			본예산	청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교육부	일반회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54,000	154,000	126,000	126,000
	일반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656,663	4,656,663	4,703,585	4,673,685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106,079	106,079	106,079	106,079
국방부	일반회계	병인건비	2,332,432	2,332,432	2,304,396	2,252,367
	일반회계	기본급식	1,553,816	1,237,137	1,666,281	1,678,901
	일반회계	동원훈련	39,668	26,563	20,921	19,804
문화체육관광부	문예기금	문화예술향유지원	21,959	22,269	24,495	24,495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60,000	60,000	60,000	60,000
복지부	일반회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7,467	27,467	27,467	26,663
	일반회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55,445	55,445	55,445	55,445
	일반회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7,735	7,735	7,735	6,709
	건강기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9,099	29,099	29,099	29,099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 의견

(1) 고등교육 부문의 자원배분 및 재정부담을 고려한 국가장학금 운영 필요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라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고 저소득층의 사립대 등록금 부담률 또한 낮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국가장학금 지원은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재량 지출이므로, 향후 고등교육 부문의 자원배분 및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사업으로,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 마련되어 2012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2023년 4조 286억원으로 2012년 1조 7,500억원 대비 약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결산 내역(2012~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A)	1,750,000	2,775,000	3,457,500	3,600,000	3,651,700	3,631,700
결산(B)	1,732,999	2,584,793	3,275,585	3,574,793	3,594,270	3,590,828
집행률(B/A)	99.0	93.2	94.7	99.3	98.4	98.9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A)	3,681,600	3,602,185	3,547,408	3,483,045	4,132,599	4,028,557
결산(B)	3,676,600	3,521,775	3,539,238	3,436,097	3,807,815	-
집행률(B/A)	99.9	97.8	99.8	98.7	92.1	-

주: 예·결산 내역에는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국가장학금 I 유형, II 유형, 다자녀장학금의 내역이며, 2012~2015년은 사업운영비 분리 불가로 예·결산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은 ① 저소득·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가구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② 대학의 자체 노력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③ 저출산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④ 지역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 6,487억원, II 유형은 3,000억원, 다자녀 장학금은 9,998억원, 지역인재 장학금은 800억원이며,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예산은 22억원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유형]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단가
I 유형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지원	- (대상) 8구간 이하 가구원 대학생 - (성적) 12학점 이수 & B학점	구간별로 연간 350만원~ 등록금 전액
II 유형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자체노력 연계	- (대상) 9구간 이하 가구원 대학생 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대학별 수립 기준
다자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 (대상)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 - (성적) 12학점 이수 & B학점	구간별로 연간 450만원~ 등록금 전액 (셋째 이상 자녀 전액)
지역인재	지역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	- (대상)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입학한 8구간 이하 학생	등록금 전액(1년) (6구간 이하 전학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매년 국가장학금 관련 기본계획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장학금 지원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단가 또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을 대상으로 최대 450만원(기초) ~ 90만원(3구간)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에는 소득 8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단가 또한 연 최대 700만원(기초·차상위) ~ 350만원(8구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대상의 제도개선 내용]

구분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다자녀
2012	기초~소득 3구간	소득 7구간 이하	
2013	기초~소득 8구간	기초~소득 8구간	
2014		기초~소득 10구간	기초~소득 8구간
2015			
2016			
2017			
2018		기초~소득 8구간 (단, 긴급가계곤란자 등 예외적 9~10구간 지원 가능)	기초~소득 8구간 셋째 이상: 가구 모두 (19~22년 연령제한 폐지, '23년 만39세 이하)
2019			
2020			
2021			
2022		기초~소득 9구간 (단, 긴급가계곤란자 등 예외적 10구간 지원 가능)	
202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2~2023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단가 추이]

(단위: 만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2	450	225	135	90	-	-	-	-	-
2013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2014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2015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2016~2017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2018~2021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2022~2023	700 (둘째이상)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주: 음영셀은 전년대비 지원이 확대된 구간

자료: 교육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고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마련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등록금 총액 13조 1,519억원 대비 국가장학금 1조 7,500억원으로 부담 경감률이 13.3%로 나타났고, 2021년에는 등록금 총액 11조 8,667억원 대비 국가장학금 3조 4,854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부담 경감률이 2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8	2020	2021	2022
등록금 총액	135,726	131,519	131,094	124,101	122,672	118,667	118,667 ¹⁾
국가장학금 지원	-	17,500	34,575	36,845	35,503	34,853	41,348
부담 경감률	-	13.3	26.4	29.7	28.9	29.4	34.8

주: 1) 2022년 등록금 총액은 2023.8월 공시 예정으로 2021년 금액 사용

자료: 교육부

또한,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대)의 5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인원의 수도 2012년 4.8만 명에서 2014년 46.7만 명, 2022년 63.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학생 대비 등록금을 반값 이상 지원받는 인원의 비율도 2012년 2%, 2014년 20%에서 2018년 이후에는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대)의 반값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인원]

구분		2011	2012	2014	2018	2020	2021	2022
재학생 인원(A)		236만명	234만명	238만명	218만명	215만명	210만명	204만명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B)		-	103만명	117만명	104만명	104만명	101만명	102만명
등록금 반값 이상 지원 인원(C)		-	4.8만명	46.7만명	66.6만명	69.2만명	67.5만명	63.8만명
재학생 대비 비율(C/A)		-	2%	20%	31%	32%	32%	31%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대비 비율(C/B)		-	5%	40%	64%	67%	67%	62%
해당범위	I 유형	-	기초수급자 (의료, 생계)	2구간 이하 (중위소득 ~50%)	6구간 이하 (중위소득 ~120%)	6구간 이하 (중위소득~130%)		
	다자녀	-	-	8구간 이하 (첫째부터)		8구간 이하 (첫째부터 연령제한폐지)		

주: 평균등록금은 2016년 기준 736만원

자료: 교육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살펴보면,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대) 대비 소득 3구간 이하 평균 지원액의 비율이 2012년 36.1%에서 2022년 6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장학금 지원의 도입과 점진적인 지원단가의 확대가 저

소득층 대학생 가구에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등록금 대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평균 지원액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년제 사립대학 평균등록금(A)	7,388	7,356	7,335	7,336	7,364	7,398	7,430	7,454	7,476	7,488	7,520
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 평균지원액(B)	2,668	3,665	4,390	4,708	4,862	4,960	5,018	4,951	4,936	4,895	5,120
평균등록금 대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비율(B/A)	36.1	49.8	59.9	64.2	66.0	67.0	67.5	66.4	66.0	65.4	68.1

주: 기초·차상위~3구간 국가장학금(I 유형, II 유형 전체) 평균 지원액 = [1학기 지원금액 + 2학기 지원금액] / [(1학기 지원인원 + 2학기 지원인원)/2]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의 성격으로 한번 지원이 확대되면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경직적인 재량지출이다. 연도별 국가장학금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조 7,500억원 규모로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2022년 3조 8,70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예산은 4조 286억원으로 나타나, 대학 재학생 수 감소에도 국가장학금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결산 내역(2012~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A)	1,750,000	2,775,000	3,457,500	3,600,000	3,651,700	3,631,700
결산(B)	1,732,999	2,584,793	3,275,585	3,574,793	3,594,270	3,590,828
집행률(B/A)	99.0	93.2	94.7	99.3	98.4	98.9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A)	3,681,600	3,602,185	3,547,408	3,483,045	4,132,599	4,028,557
결산(B)	3,676,600	3,521,775	3,539,238	3,436,097	3,807,815	-
집행률(B/A)	99.9	97.8	99.8	98.7	92.1	-

주: 예·결산 내역에는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국가장학금 I 유형, II 유형, 다자녀장학금의 내역이며,

2012~2015년은 사업운영비 분리 불가로 예·결산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대비 신청·지원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신청대상 (재학생)(A)	신청		지원		
		인원(B)	비율(B/A)	인원(C)	비율(C/A)	지원액
2012	2,339,834	1,834,032	78.4	1,034,686	44.2	1,752,704
2013	2,340,145	1,781,288	76.1	1,172,523	50.1	2,614,127
2014	2,337,334	1,732,458	74.1	1,222,160	52.3	3,313,884
2015	2,302,677	1,671,084	72.6	1,146,761	49.8	3,554,417
2016	2,246,512	1,685,565	75.0	1,155,148	51.4	3,586,147
2017	2,195,406	1,613,815	73.5	1,120,745	51.0	3,574,243
2018	2,179,317	1,643,914	75.4	1,040,568	47.7	3,564,457
2019	2,168,787	1,640,062	75.6	1,026,521	47.3	3,429,162
2020	2,153,191	1,604,243	74.5	1,037,499	48.2	3,440,565
2021	2,102,403	1,556,289	74.0	1,009,379	48.0	3,344,131
2022	2,042,395	1,587,866	72.5	1,024,256	50.1	3,722,190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2년의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증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12.23.)과 이를 종합하여 확대한 「청년특별대책」(‘21.8.26.)의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 단가를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는 연 520만원에서 첫째 자녀는 700만원으로,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는 지원구간에 따라 세 자녀 모두에 대해 450~52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내역(2023년 단가 유지)]

(단위: 만원)

구 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지원구간 경계값	2021년	-	~146	~244	~341	~439	~488	~634	~731	~975
	2022년	-	~154	~256	~358	~461	~512	~666	~768	~1,024
	2023년	-	~162	~270	~378	~486	~540	~702	~810	~1,080

'21년 지원단가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22년 ~'23년 지원단가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 자 녀	첫째,둘 째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주: 1.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2.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4.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21년 4,876,290원, 2022년 5,121,080원, 2023년 5,400,964원 기준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고등교육 부분 예산 중 국가장학금 비중이 2018~2023년 동안 33.8~42.1%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 운영지원이나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국가장학금

의 확대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019~2021년에는 국가장학금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2022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립대 운영지원, 학술연구역량강화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다. 반면, 2023년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국립대 운영 지원, 대학교육·자율 역량강화 부문의 예산 증가로 고등교육 부문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한 예산 감소로 향후 국가장학금은 유사한 예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 부문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립대(법인) 운영지원	31,821 (33.5)	34,608 (34.3)	37,273 (34.4)	38,348 (34.4)	38,067 (32.0)	47,662 (35.3)
대학교육·자율 역량강화	10,908 (11.5)	12,908 (12.8)	17,415 (16.1)	19,157 (17.2)	20,548 (17.2)	26,965 (20.0)
맞춤형 국가장학금	39,958 (42.1)	39,986 (39.7)	40,018 (36.9)	39,930 (35.8)	47,036 (39.5)	45,664 (33.8)
학자금대출	1,976 (2.1)	2,274 (2.3)	2,064 (1.9)	1,915 (1.7)	2,014 (1.7)	3,217 (2.4)
학술연구역량강화	8,117 (8.5)	8,726 (8.7)	8,941 (8.3)	9,550 (8.6)	9,382 (7.9)	9,844 (7.3)
대학교육역량강화 (사학진흥기금)	2,207 (2.3)	2,303 (2.3)	2,620 (2.4)	2,540 (2.3)	2,043 (1.7)	1,782 (1.3)
합 계	94,988 (100.0)	100,806 (100.0)	108,331 (100.0)	111,439 (100.0)	119,000 (100.0)	135,135 (100.0)

주: 프로그램에 따른 분류이며,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은 동일 프로그램임

자료: 교육부

그러나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급격한 재정소요를 초래하지 않고 지원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지만, 향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4년제 국공립대의 평균등록금이 2000년 219만원에서 2011년 435만원으로,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2000년 451만원에서 2011년 76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노력으로 대학등록금 수준이 2012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미충족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시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번 확대하면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재량지출이라는 점,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부문의 재원배분, 재정부담 및 사업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및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 운영 필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사후관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미충원 및 충원 인력의 상당수 퇴사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³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8조³⁵⁾ 등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취업, 교육, 건강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현액 77억 3,500만원 중 67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호종료 아동자립 지원체계 구축	7,735	7,735	-	-	7,735	6,709	86.7	-	1,026	14,70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34)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pp.89~93 참조.

35)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①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체계화, ② 자립준비청년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③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국 17개 시·도('22년 연내 단계적 개소) 설치·운영 - 시·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 혹은 지정하여 대상자 모집·선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선발·관리,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등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립지원전담인력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 - 아동·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시·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실행행률이 7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17개 중 11개로 나타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수행기관 선정 및 전담기관 장소 확보 어려움과 전담인력 채용 지연 등에 따라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개소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교부액	보조사업자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381	-	381	166	-	215	43.6
부산	596	-	596	592	-	4	99.3
대구	200	-	200	42	-	158	21.0
인천	217	-	217	164	-	53	75.6
광주	375	-	375	244	-	131	65.1
대전	314	-	314	288	-	26	90.8
울산	60	-	60	21	-	39	36.7
세종	13	-	13	7	-	6	53.8
경기	1,213	-	1,213	742	-	471	61.2
강원	485	-	485	68	-	417	14.0
충북	300	-	300	197	-	103	65.7
충남	367	-	367	319	-	48	86.6
전북	496	-	496	364	-	132	73.4
전남	528	-	528	357	-	171	62.9
경북	424	-	424	154	-	270	36.3
경남	499	-	499	279	-	220	55.9
제주	121	-	121	121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담인력의 채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 청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력이나, 2022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5개 시도가 계획한 전담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120명의 인력 충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말 기준 108명만 재직하고 있다.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신규 인력의 확보 어려움과 기 채용된 전담인력의 이직 및 퇴사 때문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등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제공,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원 업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 강화 지원 및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상담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현황]

(단위 : 명, %)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			
	계획 (A)	실적 (B)	충원율 (B/A)	퇴사 인원		계획 (A)	실적 (B)	충원율 (B/A)	퇴사 인원
계	120	108	90.0	44	경기	20	20	100.0	12
서울	16	12	75.0	1	강원	8	3	38.0	1
부산	9	9	100.0	2	충북	6	6	100.0	1
대구	5	5	100.0	1	충남	6	5	83.0	9
인천	6	6	100.0	-	전북	7	6	86.0	4
광주	5	5	100.0	2	전남	8	7	88.0	2
대전	4	4	100.0	1	경북	7	7	100.0	5
울산	2	2	100.0	-	경남	8	8	100.0	3
세종	1	1	100.0	-	제주	2	2	100.0	-

주: 실적은 2022년말 기준 현원이며, 퇴사 인원은 연중에 채용된 인원 중 퇴사한 인원 수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신규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기관 운영 체계가 불안정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고, 법령상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 자격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22년 예산 기준 월 306만원³⁶⁾으로 단일임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위(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차등화되어 있는 타 사회복지시설에

36) 4대 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등 제외한 기본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선임사회복지사 5~6호봉 수준에 해당한다.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2020년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및 청년 지원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2021년 23조 8,338억원에서 2023년 25조 4,17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그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사업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방안 검토 필요

첫째,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의 범위는 특정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범주로 확장되고 있다. 2022년 청년 지원 재정사업은 23개 중앙부처에서, 청년정책은 32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져,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관련 사업·과제 수 및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8조37)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37) 「청년기본법」

가 수립·시행하고, 「청년기본법」 제13조³⁸⁾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점검·분석·평가,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계획수립 이외의 역할에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 삶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의 사업 수 및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점검·분석평가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청년 대상 사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범위가 폭넓게 나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8)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타나고 사업 내용 또한 각기 다른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은 지원대상이 청년층에 한정되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예산을 따로 산출하기 어렵거나 청년층이 주 정책대상이 아닌 경우 청년정책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청년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청년정책 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2023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된지 3년이 되는 시기로,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사업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나, 청년정책 평가는 사업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측면이 있고, 환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 성과관리 및 환류 과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여건 및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한 청년 지원 재정사업 및 청년정책 추진 필요

첫째, 청년의 ‘쉬었음’ 인구의 증가 등 고용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부는 청년의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한 구직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청년 취업률·고용유발효과 등을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취업 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투입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는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국가정책적 목표로서의 타 분야와의 연계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 추진시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창업, 교육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재정투입에 따른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병 자산형성 사업인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구조 개

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지연과 지속되는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충분한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분양주택(뉴: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지원 확대는 국가장학금이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재량지출이고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고등교육 부문의 재원배분 및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VI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52-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2024-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